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 II :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멘토링 활성화 정책 방안

- ▶ 책임연구원 : 김경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오해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 ▶ 연구보조원 : 오미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촉연구원)

발 간 사 ■ ■ ■

올 한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 하나는 멘토라 할 수 있습니다. 오락연예, 경제·경영, 사회복지 등 사회 곳곳에서 멘토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자신감이나 능력이 부족한 멘티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실질적인 멘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멘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조금 늦은 감도 없지 않습니다. 일찍이 미국에서는 약 110여 년 전인 1904년에 소년소녀가장(Big Brothers Big Sisters)멘토링 프로그램을 시발점으로 멘토링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 등지에서도 이미 정부와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다양한 멘토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통 멘토링이라고 하면 성인이 멘토가 되고 청소년이 멘티가 되어서 성인 멘토가 청소년 멘티를 지지해주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중·고·대학생 청소년들에게 스스로의 자기 개발과 지역사회에서의 의미있는 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중·고·대학생 청소년이 멘토가 되고 저소득가정의 초등학생이 멘티가 되는 청소년멘토링의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 멘토와 아동 멘티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청소년멘토링은 지역사회 청소년참여의 새로운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에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멘토링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청소년멘토링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수한 멘토의 확보와 교육, 멘토링 전문가의 양성, 멘토링 매뉴얼과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멘토와 멘티에 대한 장기적인 효과성 검증 등 앞으로 많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올해 연구에서 밝혀진 청소년멘토링의 효과성과 정책제안, 그리고 청소년멘토링 운영매뉴얼과 멘토훈련프로그램이 청소년정책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수행한 본 연구원의 김경준박사와 오해섭박사, 그리고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해주신 이화여대 정익중교수, 그 밖의 집필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2011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 장 이 재 연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효율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청소년멘토링 전문가집단 10인을 구성하였다. 연구팀은 먼저 2010년에 개발한 정책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청소년멘토링과 정책대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의 발굴과 구체화 등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개발된 정책대안 8개 영역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각 정부부처에서 다문화청소년, 탈북청소년, 저소득청소년, 범죄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멘토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산발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멘토링 지원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e-멘토링, 포레멘토링, 집단멘토링, 팀 멘토링, 대안적인 전달 형식 및 구조, 범법자 아동 등 특정 인구 및 문화 집단에 맞춰진 서비스 등 청소년멘토링에 관한 혁신적인 프로그램도 실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에서는 청소년멘토링 지원을 위해 멘토링역량구축계획에 2005년부터 3년 동안 2백 50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2008~2009년에서 2011~2012년까지의 4년 동안에 특히, 교육, 고용, 훈련을 위해 3백 9십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멘토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합적·협력적인 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의 설립·운영, 우수 멘토 및 전문 인력 양성체계의 구축, 창의적인 청소년멘토링 인센티브제 도입, 청소년멘토링 영역 및 프로그램 체계의 정립 지원, 사회적 공신력 제고를 위한 청소년멘토링 참여등록제 실시, 청소년멘토링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평가지표 개발, 학습, 진로, 활동, 정서·심리, 행·재정 등 사회적 지원네트워크 구축, 청소년멘토링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의 정책과제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청소년멘토링, 포레멘토링, 멘토, 정책대안, 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과 현황 분석, 그리고 청소년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2. 연구방법

- 국내·외 사례조사, 멘토·멘티·코디네이터 대상의 의견조사, 멘토링 효과성 측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0년에 개발한 정책대안에 대하여 검토하였음.
- 10인의 청소년멘토링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자문회의와 워크숍 등을 거쳐 청소년멘토링과 정책대안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 새로운 정책대안의 발굴과 구체화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음.

3. 주요결과

1) 청소년멘토링 정책의 필요성과 의미

-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은 기존의 청소년 지원방식에 대한 반성과 청소년멘토링의 효과 검증, 사회 각계 각층에서의 청소년멘토링에 대한 요구 확대, 청소년멘토링에 대한 이해 부족과 효과적 운영을 위한 지원시스템의 미흡, 청소년멘토링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법제도, 프로그램 개발 및 기타 지원의 필요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음.
- 청소년멘토링의 활성화는 정책적으로 청소년 자원봉사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사회참여 수단의 개발, 청소년문제 예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 미래 국가사회 발전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서의 청소년역량 개발, 소외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지, 사회통합에의 기여 등의 의미를 가짐.

2) 국내 · 외 청소년멘토링 정책현황

-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학생멘토링, 탈북청소년멘토링, 보건복지부의 휴먼네트워크, Korea Hands의 청년봉사단 멘토링, 여성가족부의 사이버멘토링 ‘위민넷’, 법무부의 청소년동반자멘토링, 고용노동부의 창조캠퍼스멘토교실 등 각 정부부처에서 다양한 멘토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산발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함.
- 미국의 경우에 멘토/전국멘토링파트너십(Mentor/National Mentoring Partnership), BBBS(Big Brothers Big Sisters) 등 멘토링의 여러 부문에서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한 접근이 시도되어 왔음. 또한, e-멘토링, 또래멘토링, 집단멘토링, 팀 멘토링, 대안적인 전달 형식 및 구조, 범법자 아동 등 특정 인구 및 문화 집단에 맞춰진 서비스 등 청소년멘토링에 관한 혁신적인 프로그램도 실험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에서는 청소년멘토링 지원을 위해 멘토링역량구축계획(Mentoring Capacity Building Initiative, MCBI)에 2005년부터 3년 동안 2백 50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2008-2009년에서 2011-2012년까지의 4년 동안에 특히, 교육, 고용, 훈련을 위해 3백 9십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청소년멘토링 활성화를 위해 빅토리아 정부가 설정한 목표는 멘토링 투자에 대한 통합적이고 증거에 기반 한 접근, 질높은 멘토링프로그램에의 청소년 참여 확대, 멘토링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모든 부문의 참여 확대이며, 정책 수단으로는 현재 및 미래의 멘토링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조정을 위한 정부 내의 메커니즘,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립된 농촌 및 기타 지역의 청소년멘토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표로 설정한 기금, 프로그램의 설계, 위험 관리, 평가 등 증거에 기반을 둔 멘토링 우수사례 지침의 제공, 청소년 멘티와 멘토로 자원봉사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자문, 멘토링의 혜택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한 중요 관계자들과의 포럼, 멘토와 코디네이터에 대한 훈련, 자원봉사 자원센터와의 네트워크, 정부 종사자의 멘토로서 자원봉사 하는 기회 제공 등임.

4. 정책제언

- 청소년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통합적·협력적인 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의 설립·운영, 우수 멘토 및 전문인력 양성체계의 구축, 창의적인 청소년멘토링 인센티브제 도입, 청소년멘토링 영역 및 프로그램 체계의 정립 지원, 사회적 공신력 제고를 위한 청소년멘토링 참여등록제 실시, 청소년멘토링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평가지표 개발, 학습, 진로, 활동, 정서·심리, 행·재정 등 사회적 지원네트워크 구축, 청소년멘토링 관련 법제도 개선을 제시하였음.
- 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는 1단계(2012-2013)로 기술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훈련의 기능을 하는 중앙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2단계(2014-2015)로 대중홍보, 정보 제공과 의뢰, 커뮤니티 제공의 기능을 하는 시·도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그리고 3단계(2015이후)로 멘토링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시·군·구 단위의 멘토링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음.
- 먼저 멘토 양성체계의 구축은 제1단계(2012-2014)로 멘토양성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제2단계(2015-2017)는 시도단위 청소년멘토링 전담기구의 설치를 통한 멘토의 양성, 제3단계(2018년 이후)는 시군구단위 청소년멘토링 전담기구의 설치를 통한 멘토의 양성을 제안하였음. 또한 전문인력의 양성은 제1단계(2012-2014)에 멘토링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결연관리자 및 슈퍼바이저 과정의 개설·운영, 제2-3단계(2015-2017, 2018년 이후)는 청소년멘토링 전문인력 양성기관 상시 멘토링 전문인력 양성 과정 운영체계의 구축을 제안하였음.
- 청소년멘토링 인센티브제는 개인에게는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 인증 및 다양한 형태의 포상 등을 제공하고, 단체, 시설, 기관, 기업, 종교단체 등에게는 청소년멘토링 참여 마크 사용 승인, 공신력과 사회적 인지도 제고를 위한 각종 이미지 홍보 무상 제공, 청소년멘토링 활동내용 및 성과에 따른 예산 차별지원 등이 제안되었음.
- 청소년단체, 시설, 학교, 지역사회, 기관, 기업, 종교단체, 보호시설 등 다양한 조직별 특성에 따른 멘토링 활동 프로그램 유형을 분류하고, 매뉴얼, 운영사례집 등을 제공함으로써 환경과 여건에 적합한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 청소년멘토링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과 조직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멘토링 참여등록제의 체계를 정립하여 실시하는 제안을 하였음.
-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멘토링 모니터링을 위해서 전자정보 체계(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를 구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표준화된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을 제안하였음.

- 체계적인 멘토링활동의 추진과 지역사회 전달체계의 구축, 학교와 전달기관의 한계 극복, 지역사회 기업과의 연계 등을 위해서 지역사회 내 학습지원 네트워크, 진로체험 네트워크, 활동지원 네트워크, 정서·심리지원 네트워크, 행·재정지원 네트워크의 사회적 지원네트워크를 제안하였음.
- 청소년멘토링 관련 법·제도의 개선은 멘토링활성화를 위해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의 기존 법령의 개정과, 청소년멘토링의 종합법령이 되는(가칭)‘청소년멘토링지원법’의 제정을 제안하였음.

목 차

제 1 장 청소년멘토링 정책의 필요성과 의미	1
1.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	3
2. 청소년멘토링의 정책적 의미	4
제 2 장 국내·외 청소년멘토링 정책 현황	7
1. 국내 청소년멘토링 정책 현황	9
2. 외국 청소년멘토링 정책 현황	13
제 3 장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정책 대안	17
정책대안1 통합적·협력적인 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 설립·운영	20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20
2. 주요 정책 및 추진방법	21
3. 국내·외 유사 사례	28
4.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29
정책대안2 우수 멘토 및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30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30
2. 주요 정책 및 추진방법	31
3. 국내 유사사례	34
4.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연차별 소요예산)	35

정책대안3 창의적인 청소년멘토링 인센티브제 도입	37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37
2. 주요 정책 및 추진방법	38
3. 국내·외 유사사례	39
4.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40
정책대안4 청소년멘토링 영역 및 프로그램 체계 정립·지원	42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42
2. 주요정책 및 추진방법	43
3. 국내·외 유사 사례	44
4.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45
정책대안5 사회적 공신력 제고를 위한 청소년멘토링 참여 등록제 실시 ..	46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46
2. 주요 정책 및 추진방법	47
3. 국내·외 유사 사례	48
4.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48
정책대안6 청소년멘토링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평가지표 개발 ..	49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49
2. 주요정책 및 추진방법	50
3. 국내·외 유사 사례	54
4.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55

정책대안7 학습, 진로, 활동, 정서·심리, 행·재정 등 사회적 지원네트워크 구축	56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56
2. 주요 정책 및 추진단계	57
3. 소요예산	59
정책대안8 청소년 멘토링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개선	60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60
2. 주요 정책 및 추진방법	61
3. 국내·외 유사 사례	69
4.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70
참고 문헌	73

표 목 차

〈표 Ⅱ-1〉 국내 청소년멘토링 정책 현황	10
〈표 Ⅲ-1〉 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21
〈표 Ⅲ-2〉 전국 멘토링 파트너십의 기능	28
〈표 Ⅲ-3〉 멘토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방법 및 주기	53
〈표 Ⅲ-4〉 청소년기본법의 주요 관련 조항(예시)	63
〈표 Ⅲ-5〉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예시)	63
〈표 Ⅲ-6〉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주요 관련 조항(예시)	65
〈표 Ⅲ-7〉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예시)	66
〈표 Ⅲ-8〉 청소년활동진흥법 주요 관련 조항(예시)	67
〈표 Ⅲ-9〉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예시)	67

그림 목차

【그림 Ⅲ-1】 중앙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	23
【그림 Ⅲ-2】 단계별/년도별 멘토 양성 체계	32
【그림 Ⅲ-3】 단계별/년도별 멘토링 전문 인력 양성 체계	33
【그림 Ⅲ-4】 솔리언또래상담 지도자 양성 체계도	35
【그림 Ⅲ-5】 모니터링 시스템	52
【그림 Ⅲ-6】 사회적 지원네트워크 구성 추진단계	57
【그림 Ⅲ-7】 사회적 지원네트워크 구성도	58

제 1 장

청소년멘토링 정책의 필요성과 의미

1.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
2. 청소년멘토링의 정책적 의미

제 1 장

청소년멘토링 정책의 필요성과 의미

1.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

- ❖ 기존의 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식의 반성과 청소년멘토링의 효과검증
 - 비행청소년, 다문화청소년, 저소득청소년 등의 문제에 대한 기존의 지원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확대됨. 즉, 일회성 지원 또는 단기적 지원방식이 이들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장기적인 관계유지를 통한 실질적인 변화를 꾀하는 방식으로의 접근방법에 대한 요구가 확대됨.
 - 국내·외의 다양한 청소년멘토링 연구에서 청소년멘토링이 이들 청소년들의 학업성취 개선, 문제행동 개선, 사회적 관계 개선, 사회 심리적 발달 등의 효과가 실제적으로 검증되고 있음.

- ❖ 사회 각계각층에서 청소년멘토링에 대한 요구 확대
 -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멘토링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으며, 중·고·대학생 등의 청소년이나 성인, 주요 인사 등을 막론하고 청소년멘토링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청소년멘토링의 수요에 대하여 각 정부부처를 비롯하여 청소년기관, 사회복지기관, 대학, 기업 등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또는 지원하고 있음.

- ❖ 청소년멘토링에 대한 이해 부족과 효과적 운영을 위한 지원시스템 미흡
 - 청소년멘토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멘토와 멘티의 선발과 결연, 멘토훈련, 활동방법, 수퍼비전, 평가 등 청소년멘토링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하나, 피상적인 이해를 토대로 청소년멘토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청소년멘토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코디네이터나 수퍼바이저 양성체계의

부재, 멘토 훈련 프로그램의 미흡, 멘토링운영매뉴얼의 부족 등 청소년멘토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 청소년멘토링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법제도와 프로그램 개발 및 기타 지원 필요
 - 청소년멘토링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멘토·멘티의 선발, 훈련, 운영, 평가 등의 청소년멘토링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청소년멘토의 안정적 공급, 코디네이터 및 슈퍼바이저 양성, 지역네트워크의 형성과 지원, 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제도의 개발, 관련법의 제·개정 등이 필요함.

2. 청소년멘토링의 정책적 의미

- ❖ 청소년 자원봉사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사회참여 수단의 개발
 - 청소년들이 청소년멘토링을 통해서 멘토로서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1995년 이후 대통령자문기구인‘5.31교육개혁방안’을 통해서 제도화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형식적인 참여의 문제나 참여 동기와 성과 미흡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의미를 갖게 됨.
 -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연계를 통해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음.
- ❖ 청소년 문제 예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
 - 청소년멘토링을 통한 멘토와 멘티의 지속적인 연계는 학교 중도탈락, 가출, 폭력 등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청소년 삶의 중요한 의사결정의 순간에 멘토와 멘티가 함께 함으로써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함. 이로 인해 자칫 발생 할 수 있는 청소년 비행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음.
- ❖ 미래 국가사회 발전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서 청소년 역량 개발
 - 청소년이 멘토로서 혹은 멘티로서 멘토링활동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청소년들은 공감과 배려,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멘토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그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갖게 됨.

- ❖ 소외 청소년(disadvantaged youth)과 그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지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역적으로 소외된 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청소년멘토링을 통한 교육적, 문화적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보상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

- ❖ 사회통합(social cohesion)에의 기여
 - 청소년멘토링에서 성인과 청소년과의 연계, 저소득아동·청소년 문제에 대한 청소년의 이해와 참여, 타문화의 공감과 지원 등을 통해서 사회의 주요한 이슈 중의 하나인 계층간, 세대간, 문화간 갈등의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서 청소년멘토링이 기여함.

제 2 장

국내 · 외 청소년멘토링 정책 현황

1. 국내 청소년멘토링 정책 현황
2. 외국 청소년멘토링 정책 현황

제 2 장

국내·외 청소년멘토링 정책 현황

1. 국내 청소년멘토링 정책 현황

-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각 정부부처에서 다양한 멘토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과 기초과학 분야 전공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과학 핵심리더 멘토링, 마이스터교와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멘토링,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탈북청소년멘토링 등 다양한 멘토링을 시행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는 휴먼네트워크를 통해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과 각 분야 직업군의 역량 있는 인재를 연결하고 있으며, 또한 Korea Hands의 청년봉사단을 통해서 빈곤아동과 다문화가정아동을 지원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에서는 위민넷이라는 사이버멘토링 운영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여 여고생, 여대생들의 성공적인 직업이행을 꾀하고 있음.
- 법무부의 경우에는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동반자멘토링, 교사-비행청소년멘토링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적응과 재범방지에 노력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에서는 대학생과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의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캠퍼스멘토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음.

부처명	사업명	사업내용	
교육 과학 기술부	다문화 가정 학생 멘토링 ¹⁾	목적	대학생을 활용하여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습, 상담지원을 통해 국가 근로 장학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문화 이해 및 봉사의식제고
		대상	멘토) '10년 다문화 멘토링 참여대학, 다문화 강좌가 개설된 지식봉사 참여대학 중 희망대학의 대학생 멘티) 다문화가정 학생
		기간	2011년 6월~ 2012년 2월
		내용	다문화가정의 아동·청소년과의 만남을 통해 학습능력과 적응력 향상 등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지원금	50억 원
	기초과학 핵심리더 멘토링 ²⁾	목적	국내 대학원 기초과학 분야 전공학생들에게 연구지원
		대상	멘티) 석사 7명, 박사 13명 등 국내 우수 대학원생 20명
		기간	2010.5 - 2012.5 (3년)
		내용	WCU/WCI 해외 석학, 과학기술한림원 등 석학과의 정기적 면담·교류 등을 주선하여 멘토링 지원체제 운영
		지원금	매년 석사 과정생에게 4천만원, 박사과정생에게 6천 만원
	취업 멘토링 ³⁾	목적	마이스터와 특성화고 등 취업 중심학교 학생들의 취업지원
		대상	멘티) 마이스터와 특성화고 등 취업중심학교 학생들
		내용	KB굿잡(www.kbgoodjob.co.kr)에 마이스터와 특성화고생 전용관을 설치하여 취업멘토링 지원
	탈북청소년 멘토링 ⁴⁾	목적	탈북청소년들의 입국 및 국내 학교입학이 늘고 있으나 이들 중 상당수는 탈북과정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남한에서는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나타나는 학교 부적응현상을 해결지원
		대상	멘토) 교사, 대학생, 퇴직교원 등 멘티) 탈북학생
		내용	교사, 대학생, 퇴직교원 등을 활용해 모든 탈북 학생에게 1대1 멘토링 실시
지원금		45억 원	

부처명	사업명	사업내용	
보건 복지부	휴먼 네트워크 ⁵⁾	목적	취약계층 아동·청소년과 각 분야 직업군의 역량 있는 인재를 1:1 (멘토-멘티)로 연결하여 직업비전 형성 및 역량 강화
		대상	멘토) 사회지도층, 전문가 멘티) 저소득층,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관심계층
		내용	저소득 아동 등에게 6대 분야(성장넷, 후견넷, 장애넷, 자활넷, 생명넷, 글로벌넷) 8개 민간기관과 2천명에 대해 멘토링 서비스 제공
	Korea Hands ⁶⁾	목적	도움의 손길이 요구되는 지역에 아동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및 정서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대상	멘토) Korea hands의 청년봉사단 멘티) 빈곤아동, 다문화가정아동
		내용	빈곤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등을 대상으로 멘토링 및 정서지원
여성가족 부	사이버 멘토링 (위민넷) ⁷⁾	목적	다양한 분야의 여성역할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직업의식을 심어주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유대를 넓힘
		대상	멘토) 각계각층의 전문 여성 멘티) 여고생, 여대생, 실질적 성공을 위해 준비한 여성
		내용	온라인상에서 여성들이 삶의 지혜와 용기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조언제공
법무부	청소년 동반자 멘토링 ⁸⁾	목적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해 보호관찰 청소년의 '위기탈출'도움
		대상	멘토)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상담사 멘티) 보호관찰 청소년
		내용	보호관찰 청소년 2천명을 대상으로 주거지 등을 직접 찾아가 고민 상담, 진로지도, 심성순화 등의 활동
	교사-비행 청소년 멘토링 ⁹⁾	목적	보호관찰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재범을 방지하고자함
		대상	멘토) 교사 멘티) 보호관찰 청소년
		내용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는 광주지역 중·고 교사 60명을 특별범죄 예방위원으로 위촉하고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에 다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과 결연을 통해 멘토링 서비스 제공

부처명	사업명	사업내용	
고용 노동부	창조 캠퍼스 멘토교실 10)	목적	창작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직업능력을 키우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대상	멘토) 관련학과 교수, 외부 전문가, 선배 창직·창업자 등 멘티) 대학생, 지역청년
		내용	아이디어를 공모·선정하여 자금과 작업 공간 등을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멘토링을 지원
	청년 멘토를 만나다 ¹¹⁾	목적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기반의 양방향 방송으로 소통의 장 마련
		대상	멘토) 교수, 외부 전문가, 선배 창업자 등 멘티) 대학생
		기간	2011년 7,8월 (2개월)
		내용	다음(daum)TV팟을 통해 5회의 토크쇼가 진행되며 이 시대의 청년 멘토라 불리는 각계각층의 멘토들이 직접 참여,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조언을 해줌

- ❖ 하지만 멘토링사업의 다양성에 비해서 멘토, 코디네이터, 슈퍼바이저 등 멘토링 주요 인력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멘토링에 대한 연구, 모니터링과 평가, 기타 지원 등 청소년멘토링 운영과 지원을 위한 체계가 효과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함.
- 멘토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문기관 없이 각 수행기관에 형편에 따라 개별적으로 멘토가 양성되고 있음. 코디네이터나 슈퍼바이저 등도 전문 교육훈련을 받은 인력이라기보다는 유사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배치되어 있음.
- 청소년멘토링의 연구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프로그램 및 기술 지원, 평가 등에 대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1)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1-237호

2) 교육과학기술부사이트 (<http://www.mest.go.kr/web/1173/ko/board/view.do?bbsId=205&boar>)

3) 교육과학기술부사이트 (<http://www.mest.go.kr/web/1173/ko/board/view.do?bbsId=205&boar>)

4) 연합뉴스 2009년 8월 13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강화한다.’

5) 보건복지부 휴먼네트워크 (www.humannet.or.kr)

6) Korea Hands 사이트 (www.koreahands.org)

7) 여성가족부 위민넷 (<http://www.women.go.kr>)

8) 연합뉴스 2011년 6월 1일 ‘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 1대1 멘토링’

9) 연합뉴스 2011년 6월 2일 ‘중단위기’교사-비행 청소년 멘토링 예산 확보

10) 고용노동부 창조캠퍼스 사이트 (<http://www.creativecampus.kr>)

1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1년 7월 14일

2. 외국 청소년멘토링 정책 현황

1) 미국의 청소년멘토링 정책 현황

- ❖ 멘토링의 여러 부문에서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한 접근이 시도되어 왔음.
 - 멘토/전국멘토링파트너십(Mentor/National Mentoring Partnership)에서는 멘토링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필수요소가 되는 지침의 개발과 지역별 파트너십을 개발해 왔음. 또한 BBBS(Big Brothers Big Sisters)에서는 학교멘토링프로그램의 증거에 기반 한 향상 정도를 시범사업과 평가를 수행해 왔으며, 청소년친구기관(Friends for Youth)에서는 잠재적인 아동 가해자를 선별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도구인 지원자 선별(Screening Applications for Effectiveness)에 대한 자원을 개발하였음(Cavell, DuBois, Karcher, Keller, & Rhodes, 2009: 3).

- ❖ 청소년멘토링에 관한 혁신적인 프로그램도 실험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첫째, e-멘토링, 또래멘토링, 집단멘토링, 팀 멘토링모델 등 대안적인 전달 형식 및 구조, 둘째, 방과 후 프로그램과 직장프로그램 등 특정 지역사회 환경 내에서의 운영, 셋째, 범법자 아동 등 특정 인구 및 문화 집단에 맞춰진 서비스, 넷째, 임금이 지급되는 전문 보조 멘토, 사회적 네트워크 내의 자연적인 멘토 등의 대안적인 멘토 자원, 다섯째, 다른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보다 큰 프로그램 내에서의 통합 등이 운영되고 있음(Cavell, DuBois, Karcher, Keller, & Rhodes, 2009: 3).

- ❖ 미국에서는 가족, 학교, 이웃, 지역사회 강화 정책, 특히, 청소년 멘토링에 대한 집합적인 책임 윤리를 개발하는 정책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고, 미래 청소년멘토링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는 다음의 3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Cavell, DuBois, Karcher, Keller, & Rhodes, 2009: 4).
 - 첫째, 가장 전망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과 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 각 지역의 우수 프로그램, 각 프로그램의 하부구조에 필수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긍정적인 효과와 영향력이 큰 전국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강화

- 둘째, 청소년멘토링 연구에 대한 투자 : 대규모 전국적인 형식적, 비형식적인 멘토링 샘플에 대한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조사와 새롭고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 모델에 대한 비교 평가
- 셋째, 평가방법 및 멘토 공급 등을 위한 연방수준의 새로운 전략적 접근 : 멘토링 지원을 받는 기관들에 대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선, 대학 학자금 지원, 사용자와의 파트너십, 세액공제 및 기타 인센티브 등을 통한 멘토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

2) 호주의 청소년멘토링 정책 현황

- ❖ 빅토리아주는 호주에서 가장 먼저 청소년멘토링에 대한 전략적, 통합적 틀을 구축한 지역이다. 빅토리아 정부는 청소년멘토링 지원을 위해 멘토링역량구축계획(Mentoring Capacity Building Initiative, MCBI)¹²⁾에 2005년부터 3년 동안 2백 50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2008-2009년에서 2011-2012년까지의 4년 동안에 특히, 교육, 고용, 훈련을 위해 3백 9십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 2008년까지 청소년멘토링 활성화를 위해 빅토리아 정부가 설정한 목표는 다음과 같음(Office for Youth, 2005: 12).
 - 목표 1. 멘토링 투자에 대한 통합적이고 증거에 기반 한 접근
 - 우수 사례 멘토링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의 확대
 - 멘토링정책,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을 위한 기초적인 기준 마련
 -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향상과 안전과 보호기준(멘토와 멘티간의 프라이버시와 비밀유지를 포함)의 마련
 -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한 지식의 확장과 적용
 - 청소년, 멘토, 관련 기관 등이 멘토링에 대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함
 - 목표 2. 질 높은 멘토링프로그램에의 청소년 참여 확대
 - 정책과 프로그램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부와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력
 - 청소년에 유용한 멘토링과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확대
 - 질 높은 멘토링프로그램 참여 기회의 확대

12) 멘토링역량구축계획은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청소년부처(Minister for Sports, Recreation and Youth Affairs) 산하 청소년청(Office for Youth)에 의해서 관리되는 기관이다.

- 목표 3. 멘토링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모든 부문의 참여 확대
 - 청소년의 삶 속에서의 멘토링의 중요한 역할과 가치에 대한 지역사회 모든 부문의 이해 확대
 - 우수한 자원봉사 멘토의 확대
 - 지방 정부, 주 정부, 비정부간 멘토링 네트워크의 강화를 통한 정보와 자원 공유
 -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 및 자선기관의 재정적, 물질적 지원기회 제공
 -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자원의 개선
- ❖ 또한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Office for Youth, 2005: 13).
 - 현재 및 미래의 멘토링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조정을 위한 정부 내의 메커니즘
 -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립된 농촌 및 기타 지역의 청소년멘토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표로 설정한 기금
 - 프로그램의 설계, 위험 관리, 평가 등 증거에 기반을 둔 멘토링 우수사례 지침의 제공
 - 청소년 멘티와 멘토로 자원봉사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자문
 - 멘토링의 혜택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한 중요 관계자들과의 포럼
 - 멘토와 코디네이터에 대한 훈련
 - 자원봉사 자원센터와의 네트워크
 - 정부 종사자의 멘토로서 자원봉사 하는 기회 제공

제 3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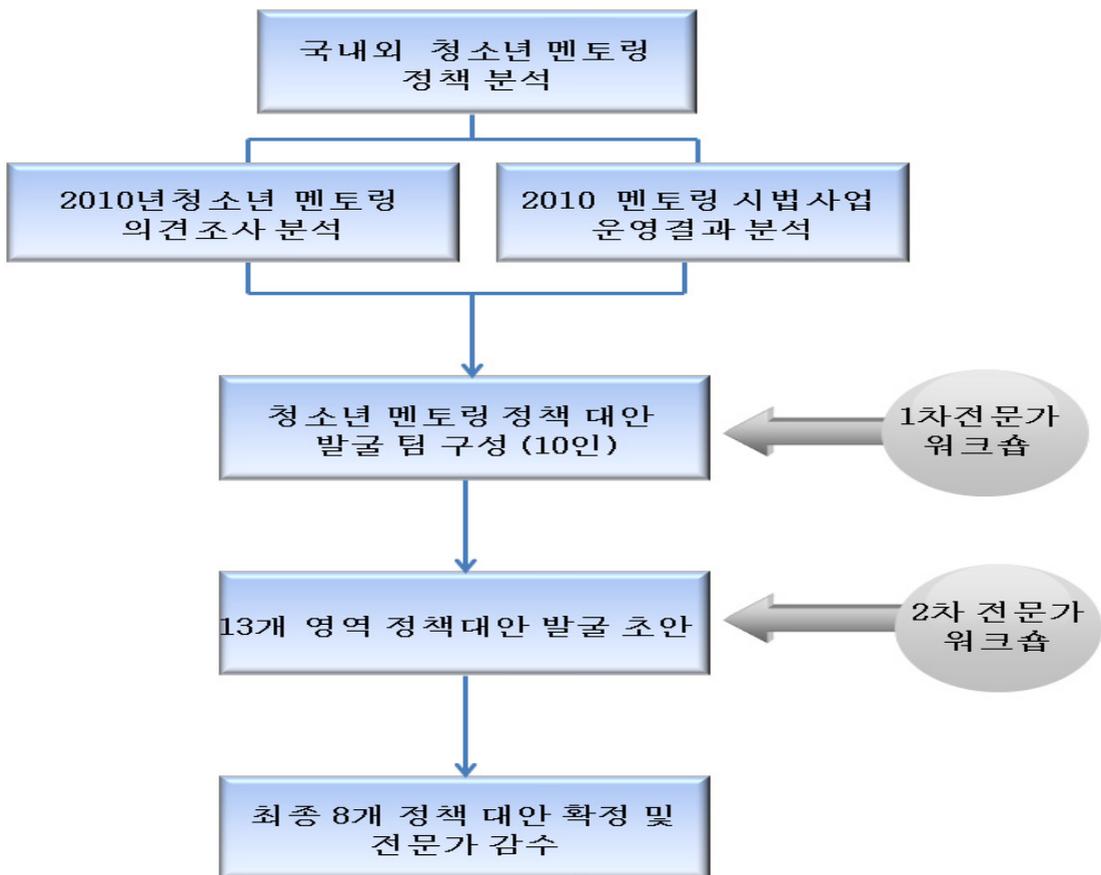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정책 대안

1. 통합적 · 협력적인 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 설립 · 운영
2. 우수 멘토 및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3. 창의적인 청소년멘토링 인센티브제 도입
4. 청소년멘토링 영역 및 프로그램 체계 정립 · 지원
5. 사회적 공신력 제고를 위한 청소년멘토링 참여 등록제 실시
6. 청소년멘토링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평가지표 개발
7. 학습, 진로, 활동, 정서 · 심리, 행 · 재정 등 사회적 지원네트워크 구축
8. 청소년 멘토링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개선

제 3 장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정책 대안

이 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을 중심으로 청소년멘토링 전문가가 10인이 참여하는 전문 연구팀을 구성하였다. 정책 대안 발굴 팀에서는 그 동안 청소년멘토링에 대한 의견조사, 국내·외 사례조사, 시범사업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기초 정책(안)을 작성하고, 이 초안에 대한 수차례의 수정 보완 작업을 통해 도출된 13개 영역 중 최종 확정된 청소년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8개 영역의 정책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우리나라에서의 청소년멘토링 운영과 지원은 개별적이고 산발적이어서 청소년멘토링이 목표로 하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프로그램에 대한 표준화된 틀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각 운영기관의 능력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며,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함.
- ❖ 청소년멘토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멘토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우수한 프로그램의 개발, 기술적 지원, 전문 인력의 양성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 멘토링은 사람을 통해 교육적인 경험활동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므로 멘토링 프로그램의 개발, 실행, 평가는 전문적인 연구와 실험을 거쳐 개발하고 보급해야 함.
 - 또한 멘토링이 인간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며 세심한 감독과 지원이 필요하며,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적, 제도적, 그리고 경제적 지원과 노력이 필요함.
- ❖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멘토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앙단위에서의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단위에서 실질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조직들이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수 있도록 「중앙 청소년멘토링 지원센터」, 「시·도청소년멘토링 지원센터」, 「시·군·구 청소년멘토링 지원센터」를 제안함.
- ❖ 운영주체는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연계하는 방안과 보건복지부 산하의 휴먼네트워크협의회 등에서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음.

2. 주요 정책 및 추진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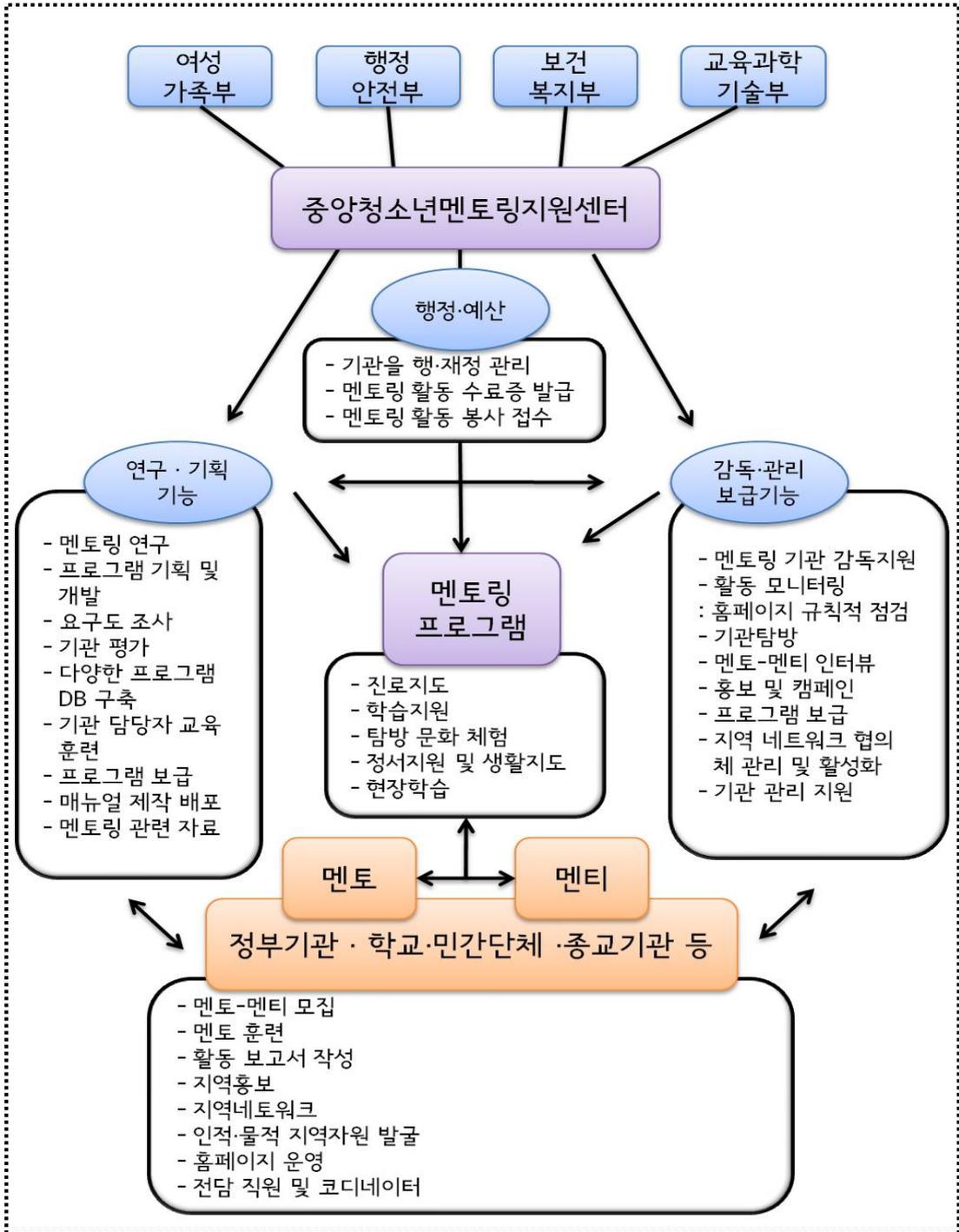
- ❖ 「중앙 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 「시·도 청소년멘토링 지원센터」, 「시·군·구 청소년멘토링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 중앙 단위에 청소년멘토링 운영 기술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과 훈련의 주요기능을 수행하는 「중앙 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를 설립함.
 - 시·도 단위에는 「시·도 청소년멘토링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청소년멘토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멘토링 정보 제공, 워크숍, 훈련프로그램 등의 커뮤니티를 제공함.
 - 시·군·구 단위에는 「시·군·구 청소년멘토링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기초 단위의 멘토링 운영 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지역네트워크를 관리함.

표 III-1 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기 구	역할/기능	세부내용
중앙 청소년 멘토링지원센터	기술지원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 멘토와 튜터 프로그램 기획과 시행 ▪ 효과적인 멘토링의 기본 ▪ 멘토 검증과 범죄경력 조회 ▪ 멘토 검증과 범죄경력 조회 ▪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 멘토링과 자원봉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 멘토에 대한 지속적 지원 ▪ 튜터링 프로그램
	전문 인력 양성 및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디네이터 및 슈퍼바이저 양성과정 운영 ▪ 멘토 훈련 및 연수과정 운영 ▪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최선의 실천에 대한 교육
시·도 청소년 멘토링 지원센터	대중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 뉴스레터 발송(1000건 이상) ▪ 전국 멘토링의 달 미디어 홍보협력 ▪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해 공공서비스 홍보를 통해 멘토링을 확산시킴.
	정보제공과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링과 관련한 콜 센터기능: 멘토지원자, 멘티지원자, 기존 멘토링 프로그램과 협력하고자 하는 단체 등의 문의에 응함.
	커뮤니티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멘토링에 대한 표창 ▪ 주 전역에 걸쳐 멘토링에 관한 워크숍 개최 ▪ 주 전역에 걸쳐 프로그램 운영자들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주최
시·군·구 청소년멘토링 지원센터	멘토링 활동수행 및 지역네트워 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단위 멘토링활동 연계망을 조직하고 실질적인 활동의 중추역할을 수행함.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1388지원단, 무지개 청소년센터 등과 연계하여 특성화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중앙 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의 설립·운영

- 이 센터는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여성가족부 등의 정부부처들이 멘토링과 그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중앙단위 지원센터로 내부에 3개 부서를 두고 각각 연구·기획, 행·예산 지원, 감독·관리 및 보급 기능을 담당하도록 구성함(1990년 설립된 미국의 National Mentoring Partnership 참조).
- 먼저 「중앙 청소년 멘토링 지원센터」는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중심으로 멘토링 정책 전달체계를 운영하는 방안이 있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청소년 멘토링 정책 수행의 중앙수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청소년멘토링 정책의 총괄·연계·교육 실시, 시·도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지원하고 각종 청소년이용시설 지원 기능을 중심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또한 중앙 단위 청소년멘토링 정책을 주관할 수 있는 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자원봉사센터」와 보건복지부 산하 「전국휴먼네트워크 운동본부」의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음.
- 한편,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청소년멘토링 활동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주요 고객인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적극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 현실적으로 관련 부처인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과 협조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된 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그림 Ⅲ -1】 중앙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

❖ 「중앙 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역할과 기능(1) : 멘토링 연구 및 기획

- ▣ 멘토링 프로그램의 기획, 개발 및 지원, 그리고 평가를 담당함. 그리고 연간 멘토링 운영 기관들에 대한 평가도 담당하며 멘토링 프로그램과 활동을 위한 자료를 개발·보급을 함.
- ▣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 실행, 그리고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 ▣ 멘토링 (예비) 참가 대상을 통해 요구도 조사
- ▣ 멘토링 활동지역, 대상, 그리고 매칭의 유형별로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 및 공모를 통해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자료 구축
- ▣ 개발된 프로그램의 이해를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 담당자 및 코디네이터 교육과 연수 실시
- ▣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요청한 기관의 요구에 맞는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거나 프로그램 담당자와 운영자에게 개발과정 교육
- ▣ 멘토 교육과 멘토링 활동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
- ▣ 다양한 활동을 위한 멘토링 전략과 방법 등을 제시한 자료 발간
- ▣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인증을 위한 필수요소들 제시
- ▣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후 평가를 위한 평가도구를 제작·배포(평가도구 제공: 멘토-멘티의 만족도, 프로그램 내용상 평가, 기관의 운영상 평가, 프로그램 실행 상의 평가 등).
- ▣ 기관 평가표 개발: 멘토링 기관 선정을 위한 주요 기준들을 체크하고 기관의 상태 분석(멘토링 담당 직원, 코디네이터, 기고나의 자산, 타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등)
- ▣ 기관별 멘토링 평가 자료를 모아 분석하고 결과를 기관에 피드백하며 전국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자료 관리
- ▣ 긍정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 사례를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나 브로슈어를 만들어 배포

❖ 「중앙 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역할과 기능(2) : 멘토링 감독·관리 및 프로그램 보급

- ▣ 전체적으로 기관의 멘토링 프로그램과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그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협조체제와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함. 또한 멘토링 기관과 참가자들의 상황 및 의견수렴을 멘토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이를 위해 모니터링단은 지역의 협의체에서 선정한 3명의 멘토링 활동전문가와 중앙의 5명의 전문가집단으로 구성하며 그 모니터링단의 구성원은 2-3년 마다 교체함.
- ▣ 기관과 프로그램을 년 2-3회 현장 방문하여 상황 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

- 멘토링 연구부서의 측면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 평가하기 위한 자료 제공, 현장에 멘토링 프로그램과 활동 자료 배포, 현장의 모니터링 결과를 연구부서에 직접적인 제공
- 멘토링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을 살핍.
- 멘토링을 위한 홍보 및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지원을 함.
- 멘토링 담당자 및 직원들의 의견 수렴
- 멘토의 활동 보고서 또는 활동 일지 검토
- 멘토링 운영기관과 협력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조율
- 기관의 홈페이지 체크를 통해 멘토링 참가자들의 활동사항 및 의견들을 수집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에 활용
- 지역의 멘토링 기관 협의체를 관리하고 상호 협력 강화

◆ 「중앙 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역할과 기능(3) : 행정 및 예산지원

- 부처들로 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전국의 멘토링 기관들에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산지원하며 행정적인 업무를 관리함. 예산 지원에 대한 전국적인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행정적인 멘토링 지원으로 멘토링 활동에 대한 수수료증과 학점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지역의 멘토링 운영 보고서를 받아 정부 관련 부처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함.
-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 및 행정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 멘토링 기관의 예산 지원을 위한 공고 및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심사기준 마련
- 지원기관에게 예산지원에 대한 보고서 요청
- 지원기관을 통해 멘토링 프로그램 및 활동에 참가한 멘토와 멘티에게 수수료증 발급
- 멘토링 활동에 대한 봉사 점수 및 학점제도 관리 등

◆ 「시·도 청소년멘토링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 「시·도 청소년멘토링 지원센터」의 일차적인 운영은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멘토링 정책 및 활동을 위한 연계기반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청소년활동 중심 멘토링정책에 대한 지원은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청소년 상담과 복지 지원 중심의 멘토링 정책은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허브기능을 수행하도록 이원화 하여 추진함.

- 중앙-지방 정부,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멘토링정책의 핵심 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영역 중심 멘토링 정책 추진체계는 중앙 행정조직에 해당하는 여성가족부가 중장기적인 청소년멘토링 정책의 수립과 기획, 포괄적 예산 지원 기능을 담당해야 함. 또한 청소년 분야의 행정체계를 중심으로 민간단체, 지역대학, 후원기업 등과 밀접한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협조 관계를 강화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청소년멘토링 정책을 주도할 법인체와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지방정부의 청소년행정조직은 이러한 법인체들과 협력과 위탁관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함.
- 중앙-지방 정부,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실천 전략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중앙과 지방정부 간 관계를 기존의 계층적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적 시각에서 서로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함.
 - 둘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별업무협의회 혹은 도-시군 간의 연찬회 중 1-2회를 정도를 ‘중앙-지방정부 간 파트너십회의’ 또는 ‘지역 행정기관-민간단체-대학-후원기업 간의 파트너십 회의’ 등으로 전환함.
 - 셋째, 청소년정책의 핵심 내용에 대한 설명회 및 홍보, 그리고 지속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중앙의 역점사업과 지방의 특성화 사업 간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중앙-지방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해야 함.

❖ 「시·군·구 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의 구성·운영

- 「시·군·구 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의 구성과 운영은 센터가 중심이 되어 청소년멘토링 정책 수행과 활동을 추진함.
- 효과적인 멘토링 활동을 뒷받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 교육청, 학교, 청소년 시설, 복지시설, 건강지원센터 등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각종 주체들이 참여한 「청소년멘토링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와도 긴밀하게 연계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해당 지역에 청소년종합지원센터(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없는 경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단체 등을 간사기관으로 지정 운영함. 시·군·구 단위 멘토링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 「청소년멘토링 지원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을 제시하는 운영매뉴얼을 중앙 청소년멘토링 지원센터에서 제작·보급함.

- 또한 청소년 멘토링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에서 실질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조직들이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또한 지역사단법인 성격의 법인체를 구성하고 지방정부로부터 역할과 권한을 위임받아 청소년멘토링 사업을 총괄하는 『청소년멘토링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보다 효과적인 청소년참여와 멘토링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시·군·구 청소년멘토링 지원협의회』의 운영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기존 청소년행정체계에 제기될 수 있는 공공성을 위협할 수 있는 대리인(agent) 혹은 민간단체의 개별 이익 추구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를 위해 지방행정기구가 청소년사업의 역할과 책무성의 확보를 위해 사업추진과정에서의 관련 조직과 지속적인 협의 및 객관적인 평가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둘째, 지역단위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운영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이 선발되고 지속적인 훈련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준거 규범들이 제정되어야 함.
 - 셋째, 재정적 기반이 필수적으로 따르게 되는데, 이를 위해 지자체의 공적 지원금과 지역커뮤니티의 자체 기금을 조성하여 투명하게 운영해야 함. 기존의 지역커뮤니티에 존재해오던 각종 시설 및 단체들을 유기적으로 네트워크하기 위한 대표성과 정당성을 갖도록 이들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함.

◆ 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의 단계별 추진전략

구분	1단계: (2012-2013)	2단계: (2014-2015)	3단계: (2015년 이후)
		「중앙청소년멘토링 지원센터」 운영시스템 구축	「시·도 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설립·운영
운영체계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가 연계하여 중앙청소년멘토링정책 전담부서 설치	「시·도 단위 청소년멘토링 지원센터」의 실질적 운영체계 효율화를 위한 조직기능 개편방안 모색	「시·군·구 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 「청소년멘토링 지원협의회」가 연계하여 「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를 주도적으로 운영

- 우선적으로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가 연계하여 청소년멘토링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앙 단위의 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함.
- 두 번째 단계로 중앙단위의 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 설립 이후에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시·도 단위의 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함.
- 시·군·구 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 청소년멘토링지원협의회가 연계하여 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 를 운영함으로써 기초 단위의 운영체계를 확립함.

3. 국내·외 유사 사례

❖ 지역협의회 구성사례

- 일본의 「아동·청소년지원 지역협의회」(‘10년~) : 교육, 복지, 고용 등 각 분야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아동·청소년지원 지역협의회」를 설치하고, 지역협의회 구성기관이 나 단체 중 한 곳을 조정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 미국의 전국멘토링파트너십(National Mentoring Partnership in USA)
 - 전국멘토링 파트너 쉽의 주요기능은 온라인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평가, 교육· 훈련 및 자문임.

표 III-2 전국 멘토링 파트너십의 기능

기능	세부내용
온라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ntor.org 운영 ▪ 멘토링에 대한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와 최신 연구결과물도 제공 ▪ 멘토링 프로그램의 기금확보 ▪ E-mentoring 정보안내 ▪ 멘토링 프로그램의 개시, 관리, 유지, 평가에 대한 정보제공. ▪ 전국 멘토링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제공, 전국4300여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별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검색하여 찾을 수 있음. 이를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기관들을 등록할 있음(Mentor.org/register) ▪ 방과 후 프로그램 정보안내,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활동, 협력, 커리큘럼, 연구 및 평가자료를 제공(Mentor.org/afterschool).

기능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커뮤니티 제공, 멘토링에 대한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의 제공 (Mentor.org/community).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과적 실천의 요소” 발간: 멘토링 프로그램을 위한 기획, 프로그램 운영과 평가에 관한 내용 “효과적인 실천의 요소를 반영하여 성공적인 멘토링 프로그램 구축하기” 발간
연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3년에 멘토링을 연구하는 주요 연구리더들을 초청하여 멘토링 연구 회의를 개최함. 이 회의에서 몇 가지 중요한 멘토링 관련 연구아젠다가 설정되었음. 2년 주기로 전국수준에서 또는 주 단위에서 멘토링과 관련한 경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훈련 및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멘토 및 멘티에 대한 온라인 훈련을 제공함. 전국 멘토링 파트너 쉽 참가자에 대한 정보, 지원 자원을 제공함. 즉 멘토링과 관련한 훈련 및 기술자문을 제공함. 멘토링을 시작하려는 기업 및 조직들과 계약을 맺고 멘토링의 실시, 확대, 강화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

※ 출처: 이봉주 외(2010), 휴먼네트워크 체계 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34-35

4.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사업명	조달방법 (구분)	2012-2013	2014-2015	2015이후
멘토링 정책 추진체계 구축	계	600	1000	600
	국고	300	500	300
	지방비	200	300	200
	기금 (기업 및 관련 단체 후원)	100	200	100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다양한 대상, 영역에서의 청소년멘토링 사업의 확대
 - 최근 멘토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확대로 다양한 멘토링사업이 발굴되어 운영되고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 여성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정부부처에서 청소년멘토링사업이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민간단체의 경우에서도 저소득청소년, 다문화청소년, 비행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으로 청소년멘토링이 운영되고 있음.

- ❖ 청소년멘토링 수행 인력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한 주먹구구식 선발·참여
 - 청소년멘토링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비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은 매우 부족하여 멘토링에 대한 경험이나 능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멘토나 코디네이터, 슈퍼바이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현재 청소년멘토링 인력에 대한 선발이나 교육에 대한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며, 각 기관의 역량에 의존하여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 부적절한 멘토링 인력의 참여는 멘티에게 상처를 주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청소년멘토링 사업이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 청소년멘토링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통해서 청소년멘토링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구성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멘토링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멘토를 양성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의 양성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멘토, 코디네이터, 슈퍼바이저 등 청소년멘토링 운영의 주요 인력에 대한 선발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정책 및 추진방법

❖ 정책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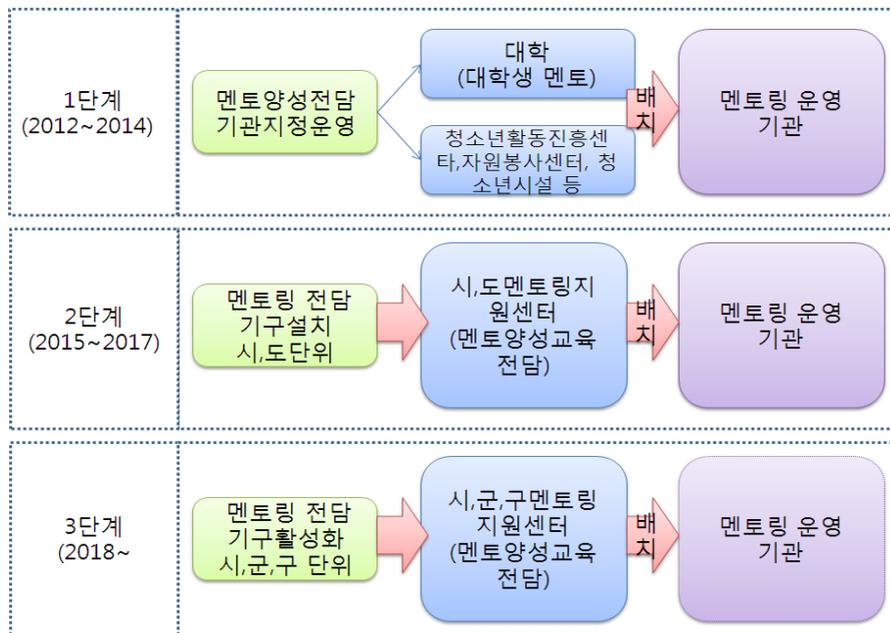
- 멘토의 양성은 멘토링 사업 전달체계와 연계하여 단계별/연차별 양성체계를 발전시켜 추진
 - 멘토링 운영기관은 멘티를 모집하고 멘토 교육을 이수하고 배치된 멘토와 결연을 통해 실제 멘토링 활동이 전개되는 기관으로서 주로 청소년기관, 시설, 단체, 복지기관, 대학 등을 의미함.
 - 우선적으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이 구축된 대학이나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시설 등에 멘토양성 전담 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시·도 단위 멘토링 전담기구와 시·군·구 단위 멘토링 전담기구 설치 이후에는 이 기구를 통해서 멘토를 체계적으로 양성함.
- 멘토링 전문인력 양성체계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이 구축된 중앙 단위의 기관을 대상으로 멘토링 전문 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 멘토링 전문 인력은 멘토를 양성하고 멘티와 멘토의 모집과 결연,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평가 등 실제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결연관리자(coordinator)와, 멘토링 업무의 조정과 감독, 통제, 지원 등을 하는 멘토링기관의 관리자인 슈퍼바이저(supervisor)를 말함.
 - 결연관리자(coordinator)와 슈퍼바이저(supervisor) 양성을 위해 중앙 단위에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함. 청소년멘토링 전문 인력 양성기관은 현재 청소년지도자를 양성하는 체제와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운영.

❖ 멘토 양성 추진단계

- 제 1단계(2012년~2014년) : 멘토양성 전담 기관의 지정·운영
 - 무분별한 멘토의 선발과 배치, 멘토링사업의 운영을 예방하고, 청소년멘토링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멘토를 양성하는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함.
 - 멘토 양성을 위한 전담기관은 현재 멘토 양성을 실제로 수행하는 대학,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시설 등을 대상으로 일정한 양성 요건을 구비한 기관을 지정·운영함.
 - 멘토 양성 전담기관의 지정은 일정한 멘토 양성 요건을 구비한 기관이 정부 또는 지자체에 양성기관 지정을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정부 및 지자체는 사전 마련된 적격요건에 준하여 심사하고, 심사에 통과한 기관에 대해 멘토 양성기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함.
 - 멘토양성 전담기관에서 멘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만이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배치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음.

- 제 2단계(2015년~2017) : 시·도 단위 청소년멘토링 전담기구의 설치를 통한 멘토의 양성
 - 시·도 단위 청소년멘토링 전담기구인 “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가칭)에서 멘토를 양성하고 청소년멘토링 운영기관에 배치하여 멘토링사업을 운영함.
- 제 3단계(2018년~계속) : 시·군·구 단위 청소년멘토링 전담기구의 설치를 통한 멘토 양성
 - 멘토 양성의 전담기구로서 시·도 단위 “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와 더불어 멘토링 활동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의 확대를 위해 시·군·구 단위 “멘토링지원센터”에서도 멘토의 양성을 추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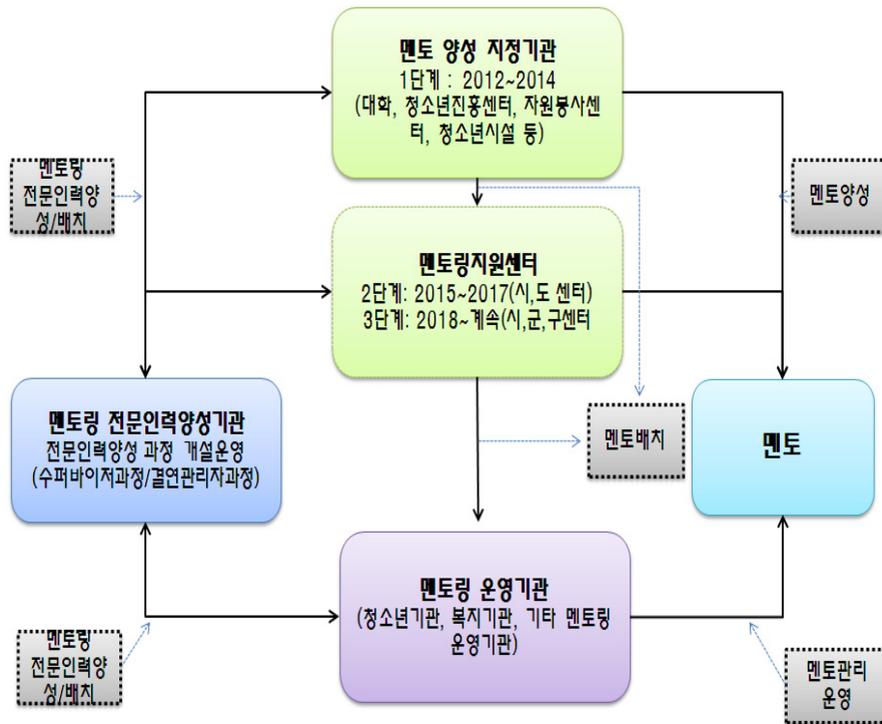


【그림 Ⅲ-2】 단계별/년도별 멘토 양성 체계

❖ 멘토 전문 인력 양성 추진단계

- 멘토링 전문 인력 양성체계
 - 제 1단계(2012년~2014년) : 멘토링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2개 연수과정(결연관리자 (coordinator)과정 및 슈퍼바이저(supervisor)과정) 개설 운영
 - 멘토링 운영기관 및 멘토양성 기관에 결연관리자(coordinator) 및 슈퍼바이저(supervisor)

- 업무를 수행 또는 수행 예정자를 대상으로 양성연수를 진행함.
- 전문 인력 양성과정 이수 후 멘토링 운영기관과 멘토 양성 지정기관에 각각 배치하여 결연관리자 또는 수퍼바이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함.
 - 멘토 양성 지정기관에서는 멘토를 양성하여 멘토링 운영기관으로 멘토를 배치하고 멘토링 운영기관에서는 배치된 멘토와 모집된 멘티를 결연시켜 멘토링 사업을 운영토록 함.
 - 제 2단계(2015년~2017)/제 3단계(2018년~계속) : 청소년멘토링 전문인력 양성기관 상시 멘토링 전문인력양성 과정 운영체제의 구축
 - 전문인력 양성체제는 제 1단계의 체계를 유지하되 멘토 양성 지정기관을 대체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시·도 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 「시·군·구 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 근무자 또는 근무예정자를 대상으로 양성연수를 실시
 - 「시·도 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 「시·군·구 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에서 멘토를 양성하고 멘토링 운영기관에 멘토를 배치하며, 멘토링운영기관에서는 멘토링 사업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그림 Ⅲ-3】 단계별/년도별 멘토링 전문 인력 양성 체계

3. 국내 유사사례

❖ 솔리언포레상담 지도자 및 전문지도자 양성체계

- 솔리언포레상담은 일정한 훈련을 받은 청소년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또래들의 문제 해결을 돕는 것으로 청소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장려하면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청소년멘토링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 청소년들 중 자질을 검비하고 또래상담활동에 대한 동기와 의욕이 있는 청소년을 선발하고 훈련을 통해 솔리언포레상담자로 양성하여 활동하게 함.
- 솔리언포레상담 인력 양성은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주관하여 솔리언 포레상담자 훈련 및 양성과정과 솔리언 포레상담지도자와 전문지도자 양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 솔리언포레상담 지도자 양성과정은 다시 솔리언포레상담 지도자과정과 솔리언포레상담 전문지도자과정의 2개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함.
- 솔리언포레상담 지도자는 학사이상의 교사 혹은 청소년지도자로 솔리언 포레상담 지도자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솔리언포레상담반을 직접 운영하는 지도자를 말함.
- 솔리언포레상담 전문지도자는 솔리언포레상담 지도자를 양성하고 솔리언포레상담 운영 및 사례에 대한 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지도자를 말함.

❖ 솔리언포레상담 전문인력 양성과정

- 솔리언포레상담 지도자는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실시하는 솔리언포레상담 지도자 연수과정 15시간을 수료한 이후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음.
- 솔리언포레상담 전문지도자는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개발한 훈련프로그램을 바탕으로 12시간 2회 이상 운영해본 경험자를 대상으로 전문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항목	산 출 내 역			금액
멘토링전문 인력	1단계 (2012~2014)	교육훈련비	250,000원 × 200명	50
		기타관리비	20,000원 × 200명	4
	2단계 (2015~2017)	교육훈련비	250,000원 × 300명	75
		기타관리비	20,000 × 300명	6
	3단계 (2018)	교육훈련비	250,000원 × 500명	125
		기타관리비	20,000원 × 500명	10
소계	1단계(3년), 2단계(3년), 3단계(1년)			540
합 계				13,020

❖ 예산조달방법

▪ 멘토 양성을 위한 예산

▫ 멘토의 대부분은 자원봉사 청소년들로서 이들에 대한 양성비용은 국비 또는 지방비로 충당하되 양성기관의 상황에 따라 후원기관의 후원금으로 조달하는 방법을 고려함.

▪ 멘토링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 멘토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은 공익성과 수익자부담원칙을 고려하여 국고50% 개인부담 50%로 조달함.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 청소년들의 역량강화와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청소년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조성이 필요함. 특히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한 보상과 격려를 통하여 동기유발 및 촉진을 위한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 청소년멘토링 활동의 활성화와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다양한 유형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청소년멘토링 활동의 특성이 가지는 청소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정책, 교육정책 등 청소년 관련 정책영역에서 구체적인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므로 청소년 수련활동인증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창의적체험활동 등과 같이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 관련자들의 동기유발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마련이 필요함.
 -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는 각종 청소년단체 및 시설, 학교, 기관, 기업, 종교단체 등으로 인센티브의 영역의 폭을 확대시킴으로써 개인이나 조직의 특성에 따라 유용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이를 통해 범국민적인 청소년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방안과 연계하여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촉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 청소년멘토링 활동은 재정적으로 충분한 예산확보가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회적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이나 공공기관, 대학교, 문화단체, 종교단체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지역사회의 유휴 전문 인력이나 고학력 학부모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전문적 자원을 활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차원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창의적 인재양성 프로젝트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2. 주요 정책 및 추진방법

구 분	1단계: (2012~2014)	2단계: (2015~2017)	3단계: (2018년 이후)
주요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역과 프로그램 유형 분류 및 D/B의 구축 ▪ 개인, 단체 등에 인센티브 내용 선정 및 제공 ▪ 인센티브제 시범 운영 ▪ 시범 운영 평가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센티브제 법제화 ▪ 공공 및 민간 전달체계의 연계시스템 구축 ▪ 인센티브제 활성화 ▪ 지역 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 지정 ▪ 매뉴얼, 우수 사례집 등 제작 및 배포 ▪ 청소년멘토링 활동의 브랜드화 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센티브제의 안정적 추진 ▪ 인센티브 포상의 정례화 및 대국민 홍보

◆ 1단계(2012~2014) : 준비단계

- 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가 설립될 경우에 센터에서 인센티브 지원사업 주관
- 청소년멘토링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시설, 학교, 기관, 기업, 종교단체 등에 대한 영역과 프로그램 유형 분류 및 D/B의 구축
- 청소년멘토링 활동 인센티브 내용 선정 및 제공
 - 개인 :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 인증 및 다양한 형태의 포상 등 인센티브의 제공
 - 단체, 시설, 학교, 기관, 기업, 종교단체 등 조직 : 청소년멘토링 참여 마크 사용승인, 공신력과 사회적 인지도 제고를 위한 각종 이미지 홍보 무상 제공, 청소년멘토링 활동 내용 및 성과에 따른 예산 지원의 차별 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
- 청소년멘토링 활동 인센티브제 시범 운영
 - 16개 시도별 시범 단체, 시설, 학교, 기관, 기업, 종교단체 등 지정
 - 청소년멘토링 활동 인센티브제 시범 운영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 2단계(2015~2017) : 시행(확산)단계

- 청소년멘토링 활동 인센티브제 본격 추진을 위한 법제화
 - 청소년멘토링 활동을 위한 공공 전달체계 및 민간 전달체계의 연계 시스템 구축

- 청소년멘토링 활동 인센티브제 활성화
 - 전국의 단체, 시설, 학교, 기관, 기업, 종교단체 등의 조직들이 청소년멘토링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지역사회 차원의 청소년멘토링 활동을 위한 지역 청소년멘토링지원 센터 지정
 - 지역 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는 지역별 청소년활동지원센터 및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활용
 - 청소년멘토링 활동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매뉴얼, 우수 사례집 등 제작 및 배포
 - 청소년멘토링 활동의 브랜드화
 - 청소년멘토링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브랜드화 전략 수립
- ❖ 3단계(2018~) : 정착(완성)단계
- 청소년멘토링 활동 인센티브제 안정적 추진
 - 청소년멘토링 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청소년을 창의 인재로 육성
 - 청소년멘토링 활동 인센티브 포상의 정례화 및 대국민 홍보

3. 국내 · 외 유사사례

-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The Duke of Edinburgh's Award)
- 영국의 에딘버러 공작에 의해 1956년에 시작된 포상제로서 현재 131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80만명의 세계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다. 포상제는 비경쟁성, 평등성, 균형성, 성취지향성, 과정중시성, 지속성 등의 10가지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참여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성과 도전정신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시킬 수 있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함.
 - 포상활동은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탐험 등 4가지 영역별 활동과 함께 합숙활동을 추가로 수행해야 하며, 포상단계는 동장(6개월), 은장(6-18개월), 금장(12-18개월)의 3단계로 이루어 지고, 4가지 활동영역이 모두 포상단계별 최소 활동기간을 충족하고 성취목표를 달성해야 포상을 받을 수 있음.

- 이 포상제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국내외 학교진학 및 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인센티브로 작용함으로써 세계적인 청소년활동 포상제로 공인되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근거로 하여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청소년 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된 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 관리, 제공하는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국가인증제도임.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인증으로 양질의 활동기회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수요자인 청소년의 욕구가 반영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유용성, 공공성, 안정성을 강조하며, 인증 받은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활동실적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자기계발과 진로탐색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인증제는 청소년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교육정책에 부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학교생활 및 국내외 대학진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4.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 ❖ 1단계 (2012~2014): 준비단계시 소요예산 : 19억원
 - 전국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 10억원
 - 청소년멘토링 활동 D/B 구축 : 3억원
 - 청소년멘토링 활동 인센티브 제공 : 3억원
 - 청소년멘토링 활동 시범운영 및 평가 : 3억
- ※ 조달방법 : 정부예산 및 기업의 사회공헌 예산
- ❖ 2단계(2015~2017) : 시행(확산) 단계시 소요예산 : 65억원
 - 전국 및 지역 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 54억원

- 청소년멘토링 활동 인센티브 제공 : 6억원
- 청소년멘토링 활동 운영 및 평가 : 3억원
- ※ 조달방법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기업의 사회공헌 예산

- ❖ 3단계(2018~) : 정착(완성) 단계시 소요예산 : 연간 26억원
 - 전국 및 지역 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 운영 : 21억원
 - 청소년멘토링 활동 인센티브 제공 : 2억원
 - 청소년멘토링 활동 평가 : 3억원
 - ※ 조달방법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기업의 사회공헌 예산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청소년멘토링 활동 영역 및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멘토와 멘티의 활동이 보다 구체화되고 합리적인 활동 선택이 가능하게 되며, 이를 통해 청소년멘토링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도를 제고시킬 수 있음.
- 청소년 단체, 시설, 학교, 기관, 기업, 종교단체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청소년멘토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프로그램의 체계화가 필요하며,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른 멘토와 멘티의 자격과 조건 등 기본적 사항에 대한 명확한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 청소년멘토링 활동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멘토링 활동영역 및 프로그램 유형별 평가와 효과성 측정을 통해 청소년의 역량개발과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음. 즉, 멘토링 프로그램별 평가도구 개발을 통하여 멘토링 활동의 발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 ❖ 이를 위해 청소년멘토링 영역 및 유형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분류체계의 정립을 제안함.
- 위기청소년, 소외청소년, 일반청소년, 장애청소년, 근로청소년 등 대상 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멘토링 활동 프로그램 영역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를 통해 맞춤형 청소년멘토링 활동을 전개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활동 영역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청소년단체, 시설, 학교, 지역사회, 기관, 기업, 종교단체, 보호시설 등 다양한 조직별 특성에 따른 멘토링 활동 프로그램 유형을 분류하여 환경과 여건에 적합한 멘토링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음.

2. 주요정책 및 추진방법

❖ 청소년멘토링 영역 분류 (주관 : 중앙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

- 활동 내용에 따른 영역 분류
 - ① 진로 영역, ② 학습 영역, ③ 리더십 영역, ④ 생활기술 영역, ⑤ 인성계발 영역, ⑥ 체험활동 영역, ⑦ 기타
- 활동 지역에 따른 영역분류
 - ① 국가 영역, ② 광역 지방자치단체 영역, ③ 기초 지방자치단체영역
- 활동 방법에 따른 영역분류
 - ① 일대일 멘토링 영역, ② 집단 멘토링 영역, ③ E-멘토링 영역, ④ 기타
- 청소년멘토링 프로그램 유형 분류 (주관: 중앙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
 - 활동 내용에 따른 프로그램 유형 분류
 - 활동 지역에 따른 프로그램 유형 분류
 - 활동 방법에 따른 프로그램 유형 분류

❖ 청소년멘토링 영역 및 프로그램 유형 D/B 구축 및 운영 (주관 : 중앙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

- 청소년멘토링 활동 참여 개인, 단체, 시설, 학교, 기관, 기업, 종교단체 등의 개인 및 조직에 멘토링 활동 정보 및 자료 제공

❖ 청소년멘토링 영역 및 프로그램 유형 분류 매뉴얼, 운영사례집 제작 보급(주관 : 전국청소년멘토링 지원센터)

- 청소년멘토링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멘토링 활동 참여 개인 및 조직들에게 기본 매뉴얼 및 운영사례집 등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멘토링 활동 도모

3. 국내·외 유사 사례

- ❖ 진로(진학, 취업 등) 멘토링 영역 - 기업연계 : IT 드림 프로젝트
 - 최근 서울시립 청소년미디어센터와 LG CNS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IT 드림 프로젝트는 전국의 저소득층 청소년들중 IT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을 선발하여 LG CNS 직원과 결연을 맺고 연말까지 매월 1회 이상의 만남 및 메일, SNS를 통한 멘토링활동을 시작하였음.
 - 멘토링 활동의 시작과 함께 중국의 IT산업체 및 문화탐방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IT드림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사회공헌 활동 모델을 제시하였고,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신들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역량 있는 IT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 체험활동(청소년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등) 멘토링 영역 : 청소년 단체 및 시설, 학교 등 참여
 - 서울시립 청소년미디어센터는 2000년 청소년 특화시설로 개관 이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활동을 전개하면서 미디어 관련 대학생, 기업인, IT전문가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영화동아리, 방송동아리, 기자단동아리 등의 전문적 활동에 멘토로 활동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청소년 미디어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를 통해 미디어센터에서 활동한 청소년들은 대학의 미디어 관련 학과에 진학하거나 미디어 관련 기업 및 방송사 등에서 근무하는 등 청소년의 진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매우 효과적인 멘토링 활동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러한 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외에도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등 청소년단체들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시설 등에서도 멘토링 활동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미인가형 대안학교 미디어스쿨

- 미인가형 대안학교인 미디어스쿨에서는 2006년 개교 이래 미디어 관련 특성화 대안학교로서 전문적인 미디어 교육을 위해 기업의 봉사활동 조직과 연계하거나 교과과정에 필요한 전문가, 외국인 봉사자, 대학생 등을 멘토로 선발하여 학생들과 결연을 맺어 교육 강사로 활동하도록 하고 있음.
- 멘토들은 학생들 수준과 요구에 따라 적합한 멘토링 활동을 전개하여 미디어스쿨 학생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제고시켰으며, 졸업생 전원이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대학진학 또는 사회진출에 기여하고 있음.

❖ 청소년멘토링 영역 및 프로그램 유형 분류 해외 사례(미국)

- National Mentoring Partnership 의 멘토링 활동영역 및 프로그램 유형분류
 - 멘토링 활동영역 : 활동장소를 기반으로 한 멘토링, 학교를 기반으로 한 멘토링, 신뢰를 기반으로 한 멘토링, 청소년 교정을 통한 멘토링,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멘토링, 기관을 기반으로 한 멘토링, E-멘토링
 - 프로그램 유형분류 : 성격, 사회성,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직업을 위한 학교수준의 멘토링 프로그램 - 직업탐구, 직업/생활기술, 인턴십 등, 학습적인 성공을 위한 프로그램 등

4.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 청소년멘토링 영역 및 프로그램 유형 분류체계 연구 : 1억원

※ 조달방법 : 정부예산

❖ 청소년멘토링 영역 및 프로그램 D/B 구축 : 3억원

※ 조달방법 : 정부예산

❖ 청소년멘토링 영역 및 프로그램 유형 분류 매뉴얼, 운영사례집 제작 보급 : 1억원

※ 조달방법 : 정부예산

사회적 공신력 제고를 위한 청소년멘토링 참여 등록제 실시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청소년멘토링 활동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인, 단체, 시설, 학교, 기관, 기업, 종교단체 등 다양한 개인과 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멘토링 참여 등록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청소년멘토링 활동이 봉사활동의 일환이 아닌 독립적인 활동 영역으로써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있는 활동임을 인식시키고, 범국민적인 활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멘토링활동 참여 등록제의 시행이 요청됨.
- ❖ 청소년멘토링 참여 등록제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멘토링활동 참여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청소년멘토링 참여 등록증 또는 인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사회적 공신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 ❖ 청소년멘토링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과 조직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멘토링 참여 등록제에 대한 체계를 정립하여 인터넷이나 SNS 등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청소년멘토링 참여 등록제는 멘토링 활동 참여 등록을 위한 과정과 절차 자체만으로도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단순한 청소년 영역의 활동에서 탈피하여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 환경 변화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서의 위상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정책 및 추진방법

- ❖ 청소년멘토링 활동 참여 개인이나 청소년단체 및 시설, 기업 등 조직별 영역의 특성을 분류하여 각계각층의 멘토링 활동 참여에 따른 특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과 조직별 등록 및 관리체계를 마련함.
- ❖ 청소년멘토링 참여 등록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과 조직의 참여도에 따라 등록의 등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차등 등록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 1단계(2012~2014) : 준비단계 (주관 : 전국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
 - 청소년멘토링 참여 등록제 운영 대상기관 조사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청소년 기관 및 시설을 중심으로 청소년멘토링 참여 등록제 운영 대상기관 조사
 - 청소년멘토링 참여 등록제 시범 운영
 - 시도 단위에 시범 청소년멘토링 참여 등록제 운영기관 선정
 - 청소년멘토링 참여 등록제를 이용한 멘토링활동 시범운영
 - 청소년멘토링 참여 등록제 시범운영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 ❖ 2단계(2015~2017) : 시행(확산)단계
 - 전국적으로 청소년멘토링 참여 등록제 운영기관 지정
 - 광역(시도)지역, 기초(시군구)지역 단위로 균등하게 지정
 - 우수 청소년멘토링 참여 등록제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포상
 - 청소년멘토링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포상을 통해 대국민 홍보 강화 및 공신력 제고
- ❖ 3단계(2018~) : 정착(완성)단계
 - 청소년멘토링 참여 등록제의 안정적 추진
 - 청소년멘토링 참여 등록제의 안정적 추진을 통하여 멘토링 활동을 청소년활동의 독립영역으로 구축하여 청소년 역량개발에 기여

- 청소년멘토링 참여 등록제에 대한 효과성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 청소년멘토링 참여 등록제의 효과성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통하여 안정적 추진체계 구축

3. 국내·외 유사 사례

- ❖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멘토링 활동은 참여 등록제를 통한 체계적인 활동보다는 사회적 필요에 따른 개인, 단체, 기업 등 산발적으로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

4.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 ❖ 1단계 (2012~2014) : 준비단계시 소요예산 : 4.5억원
 - 전국 청소년멘토링 참여 등록제 운영 대상기관 조사 : 1억원
 - 청소년멘토링 활동 참여 등록제 시범운영 : 3억원
 - 청소년멘토링 참여 등록제 시범운영 평가 : 5천만원
 - ※ 조달방법 : 정부예산

- ❖ 2단계(2015~2017) : 시행(확산) 단계시 소요예산 : 17.5억원
 - 전국 청소년멘토링 참여 등록제 운영기관 지정 및 운영 : 16억원
 - 우수 청소년멘토링 참여 등록제 운영기관 정부포상 : 1.5억원
 - ※ 조달방법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 ❖ 3단계(2018~) : 정착(완성) 단계시 소요예산 : 연간 8억원
 - 청소년멘토링 참여 등록제의 안정적 추진 : 7.5억원
 - 청소년멘토링 참여 등록제 효과성 분석 및 방향 모색 : 5천만원
 - ※ 조달방법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각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모니터링 평가는 평가과정 활동에서 참여자 중심의 관점을 중시하는 모형으로 프로그램 과정과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임.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섬세하고 엄격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멘토링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위험이 있음. 따라서 멘토링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함.

- ❖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 전자정보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멘토링 서비스의 질 향상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은 필수적임.
 - 현재 멘토링 프로그램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시행되고 있음. 그에 따른 하부조직은 더욱 방대하고,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많은 기관에 대해 평가하기란 시간적으로나 인적자원의 활용 등 어려움이 많음.
 - 이러한 이유로 멘토링 서비스 평가에 있어서 보다 원활한 정보수집과 관리를 위해 전자자료 시스템 구축이 매우 필요함.

- ❖ 프로그램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표준화된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함.
 -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지표는 각 기관마다 상이하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도구임.
 - 평가지표와 함께 평가 주기를 명시함으로써 멘토링 평가환경의 표준화를 가져올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내용을 평가, 인증 및 관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2. 주요정책 및 추진방법

◆ 모니터링 전자시스템 구축

- 전자모니터링을 위한 서버구축 및 콘텐츠 개발을 함으로써 모니터링의 전산화를 구축 등 몇 가지로 검토할 수 있음.
- 모니터링 방법에 있어서 자필서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는 정보 수집 및 분석에 다소 시일이 걸리고, 평가원 파견에 따른 교육 및 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전자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평가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정보 관리 및 프로그램 신청 등을 관리 감독할 수 있음.
-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을 위한 긴급지원 멘토링 및 위기지원 멘토링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음.

◆ 모니터링 전자시스템의 단계별/연차별 추진 계획

구분	1단계: (2012-2013)	2단계: (2014)	3단계: (2015-2016)
주요 정책	·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시스템 구축	· EDI 사용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	·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 제1단계(2012년-2013년) -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시스템 구축

-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시스템 도입을 위해 전자서버 구축과 콘텐츠 개발이 진행되어야 함.
- EDI 시스템은 서류를 컴퓨터간에 교환할 수 있도록 제정된 기준으로, 인편/우편 등 기존의 서식 전달체계와 달리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문서교환을 통해 사무실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임.
- EDI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관의 멘티와 멘토의 등록 및 서류업무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멘티와 멘토 만족도 조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가평가를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EDI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관 및 멘티와

멘토를 위한 EDI 콘텐츠 개발 및 웹서버구축이 필요함.

- ▣ 전국의 멘토링 기관과 멘티와 멘토가 이 시스템을 활용해야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하여도 다운되지 않을 만큼의 대용량의 서버 구축이 필요함.

■ 제2단계(2014년)- EDI 사용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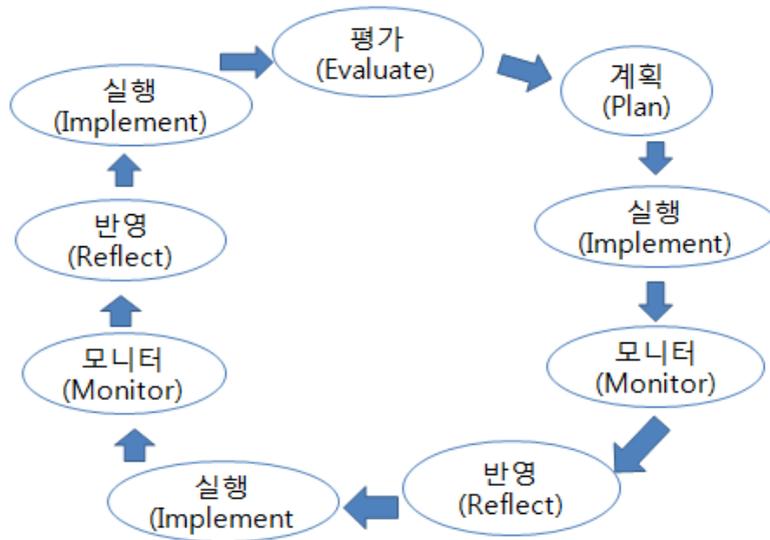
- ▣ EDI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한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프로그램 교육을 위한 동영상 강의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 ▣ 단계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범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함.
- ▣ 2013년 까지 EDI 콘텐츠 개발을 한 후 2014년 상반기(약 6개월 정도)는 이 콘텐츠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하드웨어 구입 및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간의 적합성 테스트 실시(약 6개월).

■ 제3단계(2015-2016)-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 ▣ EDI 시스템이 개방된 체계를 지니고 있는 만큼, 기관 및 멘티와 멘토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필수적임. 즉, EDI시스템이 인적자원 및 설문지 작성 등에 따른 비용절감 및 평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정보 보완이 미약한 부분이 단점으로 작용되고 있음. 따라서 EDI 시스템 도입과 함께 정보보안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 ▣ 멘티와 멘토, 기관 등의 정보 보안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보완 담당을 위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필요함.
- ▣ EDI 시스템을 통해 평가된 내용은 기관 평가 및 인센티브적용에 활용할 수 있음.

◆ 모니터링 방법 및 주기

- ▣ 모니터링 평가는 프로그램이 의도한 성과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작동되고 있고 의도한 결과물을 산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보수집의 과정임.
- ▣ 이렇게 수집된 모니터링 정보는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반영되고 실행되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됨.



*자료: Monitoring and Evaluation(www.civicus.org)

【그림 Ⅲ-5】 모니터링 시스템

- 모니터링 평가는 크게 두 가지 과정모니터링과 결과모니터링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음.
- 과정모니터링은 프로그램 실행단계에서 실행과정 및 절차와 방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절차적 문제를 기록하고 판단하는 일 등을 함(한상철, 1999¹³⁾).
- 결과모니터링은 프로그램 종료 후 멘토링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만족도와 프로그램 효과성 즉,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의 성립 여부와 사전-사후 멘티의 변화 등을 평가하게 됨.

13) 한상철(1999). 청소년지도 프로그램 평가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 연구. 6(1), 133-159).

표 III-3 멘토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방법 및 주기

분 류	내 용	
평가 방법 및 주기	과정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진행 과정 중에 효과성 혹은 유용성 평가 및 프로그램 관리와 조직의 능률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집행 계획, 집행 절차, 투입자원, 집행 활동, 내용검토 등 ▪ 평가 주기는 멘토링 프로그램 회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 멘토링 프로그램의 경우 3개월에 한 번씩 과정모니터링 ▫ 1년 멘토링 프로그램의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과정 모니터링을 하도록 한다. ▪ 과정모니터링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 매 회기마다 멘티/멘토 일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결과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사후 멘티의 변화가 있는가? ▫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가 성립이 되었는가? ▫ 멘티/멘토의 만족도 조사

◆ 모니터링의 단계별 추진 계획

구분	1단계: (2012)	2단계: (2013)	3단계: (2014-)
주요 정책	·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표준화된 멘토링 프로그램 평가지표 개발	· 멘토, 멘티, 기관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연구 및 기관 평가

- 제1단계(2012년)-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표준화된 멘토링 프로그램 평가지표 개발
 - 코디네이터 등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 코디네이터 인력의 질적 수준은 이들 인력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와 인력이 소속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멘토링 기관의 인력관리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상시키고 유지시킬 수 있음.
 -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내용별 강사 자격,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구축 여부 등을 바탕으로 인력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해야 함.

- 또한 멘토링 서비스 제공 기관의 인력관리에 대한 평가지표가 담당업무의 적절성, 전문인력의 보수교육 등을 바탕으로 개발되어야 함.
- 제2단계(2013년)- 멘토, 멘티, 기관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 멘티, 멘토, 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프로그램 만족도 및 멘티의 욕구 반영 기관의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토대로 평가지표 개발함.
 - 멘토링 참여 촉진영역으로 요구분석의 책무성, 자율적 참여도, 멘티 요구 수용의 공감성 및 정보활용의 용이성 등을 토대로 프로그램 운영관리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
 - 멘티 모집 및 활동방법에 대한 지표로 참가자 모집의 적절성 및 활동방법의 다양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지표 개발
- 제3단계(2014년~계속)-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연구 및 기관 평가
 - 진행되고 있는 멘토링 사례를 분석하고 효과 및 성공요인을 중심으로 멘토링 운영지침 수정 및 개발
 -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위해 2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멘토링 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
 - 기관평가는 기관이 EDI시스템에 나타난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및 멘티/멘토의 만족도 평가, 그리고 서면 자가평가를 토대로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기관 평가가 이루어짐.
 - 기관 평가위원 구성은 멘토링 전문가, 학계, 현장 실무자 등 3인~5인으로 구성함. 현장 실무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의 멘토링 기관을 평가할 수 없음.

3. 국내 · 외 유사 사례

- ❖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EDI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음.
- ❖ 미국 멘토링 지원부서인 JUMP는 멘토링 운영에 관해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친 멘토의 수와 멘토링 프로그램이 시작한 이후 청소년들의 참여(등록)율 여부, 그리고 새로운 멘토의 수 증가여부를 기준으로 멘토링의 성공 여부를 평가함(www.ojjdp-dctat.org/help/MentoringGrid.doc).

- ❖ 미국과 호주, 캐나다, 유럽(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등은 정부와 민간의 지원으로 청소년 멘토링이 이루어지고 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및 그 효과성(청소년 폭력, 약물 남용, 학습능력 및 적응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 Tiemey와 Grossman(1995)은 고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BB/BS멘토링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청소년들의 폭력경향이 낮아지고, 학교출석률이 증가하였으며, 자기유능감과 대인관계가 향상되고 약물남용은 낮아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 LoSciuto , Rajara, Townend 와 Taylor(1996)은 청소년 약물예방에 대한 세대간 멘토링 접근에 관한 연구를 통해 멘토링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학교출석률향상과 미래 및 성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영향을 주고, 약물남용도 낮아진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 ❖ Coverse와 Lignugaris//Krafe(2009)이 고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기반 멘토링을 실시한 결과 그들의 학업태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멘토링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음.

4.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 소요예산

항 목	단계별/연차별	금액
전자정보 시스템 구축	제1단계-연구(2012-2013)	1억
	제2단계-연구(2014)	2천 5백만원
	제3단계-연구(2015-2016)	2천 5백만원
모니터링 평가 프로그램 개발	제1단계-연구(2012)	2천 만원
	제2단계-연구(2013)	2천 만원

❖ 예산조달방법

- EDI 시스템 개발비는 기본적으로 국고와 지방비로 하되, 기존의 ED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KT 등의 후원을 받아 기금 조달을 할 수 있음.
- 모니터링 평가 프로그램 개발은 국고 및 지방비와 후원기관의 후원을 받아 조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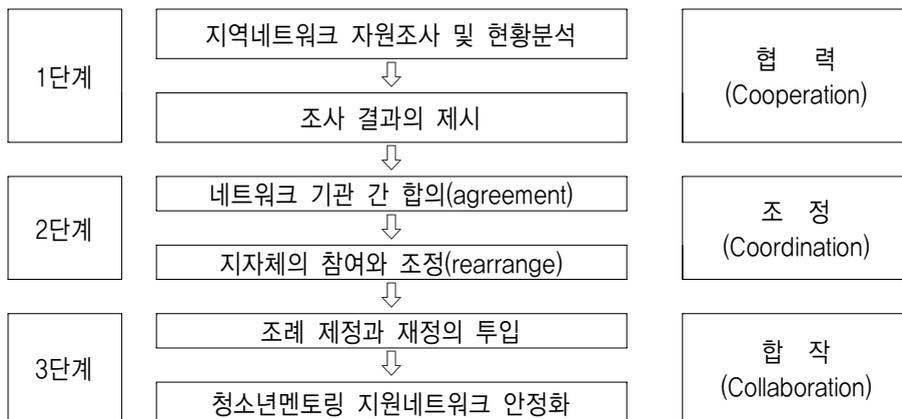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전국 실태조사 결과, 심각한 수준의 위기결과를 지닌 청소년은 전체 일반청소년의 약 15.4%에 달하는 7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중 2.0%는 매우 심각한 고위험군, 13.4%는 잠재 위험군으로 고위험군의 60%, 잠재위험군의 23%는 이미 심각한 수준의 위기결과를 경험하고 있어서 이들에게는 집중적이면서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개입이 필요함.
- ❖ 흔히 학교와 지역사회가 잘 연계된 형태를 ‘지역사회학교(Community based school or Community school)’라고 부르는데, 넓게는 지역사회가 평생교육의 공간으로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까지를 포함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지역사회학교 모형은 지역 내 아동청소년들이 지역사회라는 실제 사회로부터 학습할 수 있고, 또 다양한 학습을 위해 지역사회자원이 연계되는 모형임(Peter, 1977).
- ❖ 지역사회는 구성원(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가 존재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욕구와 문제의 해결을 가능케 하는 자원이 존재하는 삶의 장(場 ; 마을)임. 따라서 지역사회가 지역 아동청소년들의 문제 해결 및 건강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능력을 제고(提高)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는 ‘신(新) 청소년 지역사회운동(Movement)’이 될 것임.
- ❖ 청소년멘토링의 사회적 지원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은 체계적인 멘토링 활동의 추진, 지역사회 전달체계의 필요, 학교와 서비스 전달기관의 한계, 지역사회 기업의 전문성 연계 및 도입 등과 같은 데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음.

- 체계적인 멘토링활동 추진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협력 필요 :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멘토링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요건은 협력임. 예를 들어, 대학,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기관 및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독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방식을 통합하여 학습 분야는 대학에서, 활동이나 체험은 아동청소년기관에서, 지역자원의 연계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상호 분담하여 연계 추진한다면 그 효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
- 멘토링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서비스전달 체계 필요 : 국내 대부분의 멘토링활동이 멘티의 성장과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멘토링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멘토와 멘티를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전달체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됨.
- 학교와 서비스전달기관만의 기능과 역할의 한계 인식 : 학교기반 멘토링활동 및 학교와 연계해서 진행되는 멘토링활동의 경우, 학교와 서비스전달기관 간의 신뢰성만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기능과 역할에 한계가 있으며, 멘토링활동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지역사회 기업의 전문성 연계 및 도입 가능 : 기업의 우수인력을 활용해서 청소년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멘토링활동의 전문성을 벤치마킹하여 도입이 가능한 부분을 분석 해볼 필요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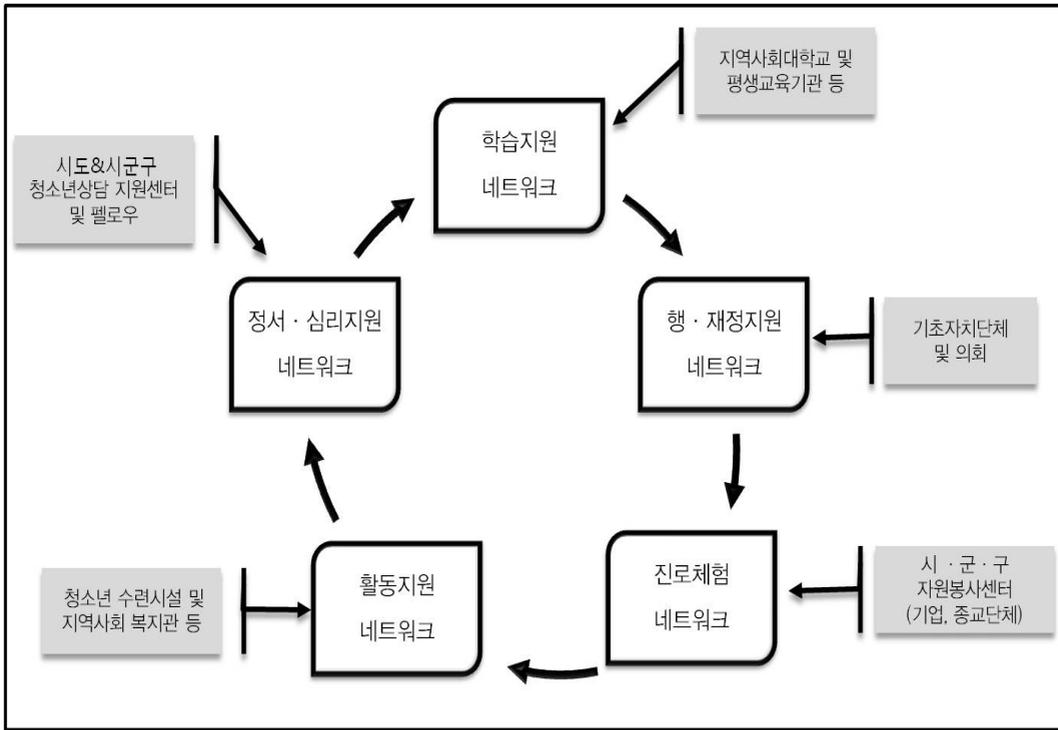
2. 주요 정책 및 추진단계

❖ 사회적 지원네트워크 구성 추진단계



【그림 Ⅲ-6】 사회적 지원네트워크 구성 추진단계

◆ 사회적 지원네트워크 구성도



【그림 Ⅲ-7】 사회적 지원네트워크 구성도

- **학습지원 네트워크** : 학습지원 멘토링을 위한 네트워크 자원은 대학교와 교육청 산하의 도서관과 같은 평생학습 기관이며,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사회봉사 학점이수’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학습멘토링을 지역사회 안에서 통합해 볼 필요가 있음.
 - 최근 교육청산하 도서관에서 확산되고 있는 “리빙 라이브러리(Livinglibrary)”사업은 새로운 유형의‘1:1 매칭 멘토링’으로 각광받고 있음.

- **진로체험 네트워크** : 진로체험 멘토링을 위한 사회적 지원네트워크의 구심점은 행정안전부 산하‘시군구 자원봉사센터’가 맡아야 함. 오랜 기간 동안 지역사회 내에서 자원봉사를 위한 수요처와 공급처를 관리해온 노하우와 인프라가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음.
 - 관내 기업뿐만 아니라 멘토/멘티를 지지하고, 지원해 줄 ‘펠로우(Fellow)’ 발굴 및 연계에 매우 용이한 이점(利點)이 있음.

- **활동지원 네트워크** : 학습지원만으로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돕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다채로운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이러한 활동지원 멘토링을 위한 사회적 지원네트워크의 중심점은 청소년 수련시설 및 지역사회 복지관(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및 장애인 복지관)이 되어야 함. 다양한 체험(문화, 교육, 예술, 체육 등)활동을 위한 시설 및 인적자원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도 풍부하기 때문임.
- **정서·심리지원 네트워크** : 청소년기에 겪는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로써 멘토/멘티 펠로우(Fellow)와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수행 함. 향후 ‘청소년 멘토링 SOS지원단’으로 발전하여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례관리 및 긴급구조와 지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행·재정지원 네트워크** : 지역사회 청소년 멘토링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기초자치단체(시·군·구)와 의회의 역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함. 지자체는 사업의 주관자로 참여하여 멘토/멘티 결연식 지원(결연증서, 공공행정문서 수발, 대내외 홍보 등), 우수사례 발표회 및 지역사회 멘토/멘티 페스티벌 개최 등 사회적 지원네트워크의 공공(公共)성과 자원간 참여의 적극적인 동기부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함. 또한, 의회는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 및 관련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 멘토링 활성화에 아교폴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함.

3. 소요예산

항 목	단계별/연차별	금액(원)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구축 (시군구 단위)	학습지원 네트워크	1억
	진로체험 네트워크	2억
	활동지원 네트워크	1억 5천만
	정서·심리지원 네트워크	5천만
	행·재정지원 네트워크	3천만

정책대안8 청소년 멘토링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개선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 ❖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과 관련한 법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등의 직접적인 청소년정책관계법은 물론, 민법, 소년법 등을 포함하면 250여개가 되는 것으로 언급될 수 있으며, 법령별로 각기 다른 입법목적과 입법대상을 가진 것으로 이해됨.
- 예컨대,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정책의 본격적인 근거법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하며,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법으로 존재하고 있음. 2004년에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통해 자신의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제정되었음.
- 이 밖에도 청소년에 대한 인권보장과 건강, 안전보장 및 경제적 자립지원 등에 대한 국가사회적 책무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제정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관계법은 청소년보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본적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 그러나, 청소년활동의 실천현장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자원봉사활동과 자생적인 참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과 사업은 매우 부족하며 제도적 지원을 결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최근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하나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청소년멘토링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는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임.
- 한편, 청소년참여에 대한 제도적 관심은 지난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으며, 최근의 '청소년활동진흥법('04년 제정)'의 제정과 그간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활용되었던, 청소년육성기금('89년 조성) 등을 기반으로, 청소년활동시설과 프로그램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청소년참여제도가 운영되어 왔음.

- ❖ 그동안 청소년참여활동과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청소년참여적 멘토링활동은 별다른 직접적인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가 없는 가운데, 정책사업으로 부분적으로 수행되어 왔음.
 - 기존의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에서는 청소년활동의 진흥, 청소년복지의 지원, 및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으나, 청소년참여활동과 멘토링활동을 체계화하고 강화하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로서는 볼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짐.

- ❖ 특히, 청소년참여적, 자원봉사적 청소년또래 멘토링활동은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저소득 가정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기존의 개별법을 통해서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위한 법제도의 확립은 중요한 국가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는 청소년멘토링활동이 청소년연령이 봉사자에게는 의미 있는 봉사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돌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동시에, 청소년멘토링활동은 청소년활동과 청소년복지, 청소년역량개발, 청소년참여증진 등의 다양한 영역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더욱 새로운 지원체계의 마련이 요청됨.

- ❖ 이에, 청소년이 사회적 참여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고 청소년참여적 인 멘토링활동을 활성화하는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멘토링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규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멘토링활동과 관련한 정책사업의 현황과악과 함께, 법제도적 현황을 고찰하고 관련 정책의 내용을 법제화하는 단계적/연차별 추진계획을 연구하고 이를 추진함.

2. 주요 정책 및 추진방법

- ❖ 청소년 멘토링 관련 법제도는 현행의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향과 청소년멘토링활동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는 새로운 포괄적인 법을 입법하는 방향 등의 몇 가지로 검토할 수 있음

- ❖ 청소년멘토링활동 자체만을 위한 입법은 현실성이 낮다는 점에서 청소년복지의 지원, 청소년활동

의 진흥,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강화, 아동청소년의 참여강화 등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내용이 필요함.

- ❖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단일 법제를 갖는 것이지만, 우선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를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다음으로 기존 법령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을 검토하고 궁극적으로는 청소년자원봉사와 멘토링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참여활동진흥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 단계별 추진 계획

구분	1단계: (2012)	2단계: (2013-2014)	3단계: (2015-2016)
주요 정책	· 청소년멘토링 법제도 연구 수행	· 청소년멘토링 관련 기존 법령 개정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 (가칭)“청소년멘토링지원법” 제정

- 제1단계 (2012) - 법제연구 : 청소년멘토링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앞서 언급된 멘토링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현행법과 주요 선진국의 제도에 대한 분석과 대안모색, 그리고 구체적인 개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함.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청소년멘토링활동의 주요 참여자(멘티, 멘토, 학부모 등), 멘토링서비스 운영 주체와 관련 인력(코디네이터, 슈퍼바이저, 자원봉사자 등), 관련 지원기관과 유관단체 등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의견수렴과정을 가짐.
 - 실태분석과 선진국 사례연구, 개정안과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방안을 재검토하고 그 내용을 주요 정책과제로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제2단계 (2013 - 2014) - 기존 법령 개정 : 기존 법령의 개정을 통한 멘토링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
 - 첫째, 청소년기본법의 주요 관련 조항은 청소년지도자 양성연수 (제20조),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제29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제47조), 청소년복지의 향상 (제49조), 기금의 사용 등 (제55조) 으로 볼 수 있으며, 관련 시행령의 조항을 포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III-4 청소년기본법의 주요 관련 조항(예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20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등에 관한 기본방향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청소년지도사)	제18조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이 청소년업무에 관한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③ ④	제2조(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 지원)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의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관련 단체·기관 및 대학 등의 장은 연수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수목적 및 과목 2.
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표 III-5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예시)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예시)	비고
제20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등에 관한 기본방향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사, 청(소)년멘토 등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이하 생략)	청소년지도자의 종류에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 멘토"를 명시하여 포함되도록 함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예시)	비고
<p>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보조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9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 등의 (이하 동일)</p>	<p>단체"등"을 추가함으로써 단체 및 이에 준하는 멘토링 활동단체가 포함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령 등에 규정함.</p>
<p>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멘토링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하 동일)</p>	<p>청소년활동 예로서 멘토링활동 명시함</p>
<p>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p> <p>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의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p> <p>① 국가... (이하동일)</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의 보장, 직업재활훈련, 멘토링활동,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 (이하 동일)</p>	<p>멘토링 활동 명시함</p>
<p>제55조(기금의 사용 등)</p> <p>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활동의 지원 2.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3.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운영 및 활동을 위한 지원 5.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6. 청소년보호를 위한 지원 7. 청소년육성정책의 수행과정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지원 8. 기금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p>제55조(기금의 사용 등)</p> <p>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청소년활동과 멘토링 사업의 지원 2. 청소년... (이하 동일) 	<p>기금지원사업으로 멘토링 활동사업 명시함</p>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예시)	비고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관리기관(이하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기금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p> <p>③ 기금관리기관은 청소년 육성 또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 또는 기금관리기관의 시설·물품 그 밖의 재산의 일부를 청소년단체의 기본재산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p> <p>④ 기금관리기관은 기금조성의 전망을 고려하여 기금사용을 조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육성을 위한 재원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 둘째,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주요관련 조항은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제4조),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 (제12조), 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16조)이 검토대상임.

표 III-6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주요 관련 조항(예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4조(청소년의 자치권 확대)</p> <p>① ②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p>	해당 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p>제12조(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기초적인 생활지원·의료지원·직업훈련지원·청소년활동지원 등으로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항은 제외한다.</p> <p>③.....</p>	<p>제6조(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내용 등)</p> <p>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다음의 금전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p> <p>1.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 2.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p>	해당조항 없음

표 III -7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예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예시)	비고
<p>제4조(청소년의 자치권확대)</p> <p>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가정 및 사회는 적절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관련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의 대표를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p>	<p>제4조(청소년의 자치권확대)</p> <p>① - ③ (현행과 동일)</p> <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자율적 참여확대에 기여하는 멘토링활동 등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p>	<p>청소년자치권과 관련하여 자율참여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대표적 활동으로 멘토링에 대한 조치시행을 명시하는 조항을 추가함</p>
<p>제12조(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기초적인 생활지원·학업지원·의료지원·직업훈련지원·청소년활동지원 등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항을 제외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내용·범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p> <p>① 국가... (이하 동일)</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중략) ... 직업훈련지원, 멘토링활동과 청소년활동 지원 등으로 한다</p>	<p>특별지원의 내용에 멘토링활동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킴</p>
<p>제16조(시설의 설치·운영 등)</p> <p>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도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선도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선도활동에 대한 지원 및 지도자 교육 등 선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p>	<p>제16조(시설의 설치·운영 등)</p> <p>국가 ... (중략) ... 시설의 설치·운영, 선도를 위한 멘토링활동 등 선도프로그램의 개발·보급.</p>	<p>선도프로그램과 관련한 멘토링활동을 명시함.</p>

- 셋째,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주요 관련 조항은 청소년활동의 지원 (제5조), 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제60조), 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제64조),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제65조) 등으로 볼 수 있음.

표 III-8 청소년활동진흥법 주요 관련 조항(예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 ② ...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활동시설·청소년활동프로그램·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① ... 등 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제60조(청소년동아리활동활동의 활성화) ① ...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제65조(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해당조항 없음	해당조항 없음

표 III-9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예시)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예시)	비고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활동시설·청소년활동프로그램·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현행과 동일) ② 국가... (중략)... 프로그램·청소년지도사, 청(소)년 멘토 등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 (이하 동일)	청소년지도자의 종류에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 멘토"를 명시하여 포함되도록 함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예시)	비고
<p>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활동프로그램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에있어서 문화예술관련단체·청소년동아리단체·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문화활동진흥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참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p> <p>① 국가 ... (중략) ... 문화활동프로그램개발, 문화체험 멘토링의 확산, 문화시설 확충 등 ... (이하 동일)</p> <p>② 국가 ... (중략) ... 동아리단체·멘토링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 (이하 동일)</p>	<p>멘토링에서 문화체험을 확대하도록 지원하는 근거조항 명시.</p> <p>문화활동 진흥을 위한 멘토링단체 추가 명시</p>
<p>제64조(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p> <p>② 청소년활동시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다.</p>	<p>제64조(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p> <p>① 국가 ... (중략) ... 동아리활동과 멘토링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p> <p>② 청소년... (중략) ... 동아리활동과 멘토링활동 등에 필요한 ... (이하 동일)</p>	<p>청소년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멘토링활동을 명시적으로 추가함</p>
<p>제65조(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p> <p>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7.7.27]</p>	<p>제65조(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국가 ... (중략)...봉사활동과 멘토링활동 등을 활성화할 ... (이하 동일)</p>	<p>멘토링활동을 명시함</p>

▫ 넷째, 청소년멘토링활동에 관한 형행 법령으로는 이 밖에도 자원봉사활동진흥법,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사회복지관련 법령과 제도 등도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련 조항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작업이 필요함.

▪ 제3단계 (2015-2016) - 법령제정 : 청소년멘토링 등의 활성화를 위한 (가칭) '청소년멘토링지원법'제정

▫ 현행의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한 접근은 현실적일 수 있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멘토링을

활성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이에 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개정 대상이 되는 법령들은 각기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멘토링활동은 근거조항을 가질수 있는 정도로 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사료됨.

- 이 점에서 청소년멘토링활동, 특히 또래 멘토링활동의 활성화를 포함한 각종 지원체계와 네트워크, 인력양성, 효과성 검증, 운영기관에 대한 평가, 전달체계의 수립 등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법령의 제정이 필요할 것임.
- (가칭) '청소년멘토링지원법'은 멘토링활동에 관련된 주요한 내용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는 자원활동의 강화와 각종 지원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자율참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의 자율참여를 강화하고 멘토링활동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참여활동 또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보급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제도를 체계화하는 성과가 기대됨.
- 특히, "(가칭) 청소년멘토링지원법"의 제정은 새로운 청소년관계법을 추가함으로써 청소년관련 법제도 전반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정책의 영역이 자원참여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효과를 갖게 됨.

3. 국내·외 유사 사례

- ❖ 저소득가정 아동을 지원하기 대안으로 마련되고 있는 청소년멘토링활동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복지분야는 물론 청소년분야의 실천현장에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의 주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멘토로 참여하는 청소년 "또래 멘토링(peer mentoring)" 활동이 2010년 이후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임.
- 청소년멘토링복지서비스 또는 또래 멘토링활동은 정부부문은 물론, 민간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나, 서비스 유형과 종류, 주요 대상, 지원체계 등 관련 제도의 미비로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청소년멘토

링활동은 대표적인 멘토링단체인 BB/BS은 물론, 많은 청소년단체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정착하고 있으며, 또래 멘토링의 경우도,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활동으로 확산되면서 그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청소년 멘토링활동은 물론, 또래 멘토링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욕구조사, 사례 분석과 효과 연구는 물론, 멘토에 대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용, 그리고, 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의 양성과 사회적 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기관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등에 이르는 전반적인 분야에서의 체계적인 분석과 제도적 보완이 요청되고 있음.

4.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 ❖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의견수렴, 공청회, 입법적, 행정적 검토와 정책협의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 우선, 1단계로서 법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와 관련 법령의 체계적 검토 등을 위한 전문연구 등을 위해 2억원(제1단계-연구), 다음 단계로서 기존법령을 중심으로 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개정하기 위한 타스크포스(TF) 기획단 운영,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 정책협의 등의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2억원(제2단계-기존법개정), 마지막 단계로서 "(가칭) 청소년멘토링지원법"의 제정을 위한 연구 및 타스크포스(TF) 기획단 운영,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 정책협의 등에 2억원(제3단계-법제정) 등 최소 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단계	제1단계-연구	제2단계-개정	제3단계-제정
연도	2012	2013-2014	2015-2016
내용	기초연구 법령검토	TF 기획단운영/ 의견수렴	기획단운영/ 의견수렴
예산액	2억	2억	2억
예산 조달	국고 (청소년정책연구원/전문가 협동연구)	국고 (청소년정책연구원/전문가/ 주관부처)	국고 (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가/주관부처)

- ❖ 소요 예산은 전액 국고로 조달하며, 제 1단계의 법개정 방안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체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수행하되, 청소년관계법령연구 또는 청소년멘토링연구 전문학자를 중심으로 중점과제 또는 협동과제의 형태로 수행하도록 함. 제2단계 이후부터는 개정 법령 소관 부처의 예산을 활용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문가/주관부처 등의 공동연구 또는 정책사업 형태로 추진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음.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정책과제 총괄표

정책과제	주요 내용	전담부서 및 기관
통합적·협력적인 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 설립·운영	청소년멘토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실질적인 운영체계의 구축, 서비스 제공 기관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중앙, 시·도, 시·군·구 단위의 센터 설립·운영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 중앙자원봉사센터, 전국휴먼네트워크운동본부
우수 멘토 및 전문 인력 양성체계 구축	멘토 양성과 코디네이터 및 슈퍼바이저 등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과정 개설 및 전담기관 설립·운영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시설 등 · 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
창의적인 청소년멘토링 인센티브제 도입	· 개인 :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 인증, 다양한 형태의 포상 제공(단체·시설·기업 등) : 청소년멘토링 참여 마크 사용 승인, 각종 이미지 홍보 무상 제공, 청소년멘토링 활동내용 및 성과에 따른 예산 지원의 차별 지원	· 지역청소년활동지원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 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
청소년멘토링 영역 및 프로그램 체계 정립 지원	청소년단체, 시설, 학교, 지역사회, 기관, 기업, 종교단체, 보호시설 등 다양한 조직별 특성에 따른 멘토링 활동 프로그램 유형 분류, 매뉴얼, 운영사례집 등을 제공	· 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청소년활동지원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사회적 공신력 제고를 위한 청소년멘토링 참여등록제 실시	청소년멘토링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과 조직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멘토링 참여등록제의 체계를 정립하여 실시	· 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청소년활동지원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멘토링 전자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평가지표 개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멘토링 모니터링을 위해서 전자정보 체계(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구축,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표준화된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 청소년멘토링지원센터(청소년활동지원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사회적 지원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내 학습지원 네트워크, 진로체험 네트워크, 활동지원 네트워크, 정서·심리지원 네트워크, 행·재정지원 네트워크 구축	·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자원부
청소년멘토링 관련 법제도 개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의 기존 법령의 개정, 청소년멘토링의 종합 법령이 되는(가칭)'청소년멘토링지원법'제정	· 여성가족부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김지선(2002). 비행청소년을 위한 멘터링에 관한 연구-미국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서울: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현철(2011).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통한 보호체계 구축방안', 노원구 지역사회 청소년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서울:서울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노원청소년상담지원센터.
- 이봉주(2010). 휴먼네트워크 체계 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보고서. 서울:보건복지부.
- 이창호(2011). '지역사회 청소년 상담 및 위기지원을 통한 보호체계 구축방안', 노원구 지역사회 청소년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서울:서울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노원청소년상담지원센터.
- 임지연(2007). 프로그램의 논리주도적 평가준거체계 개념모형에 관한 고찰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학연구, 제14권 제1호, pp. 47-70.
- 최정규 · 강민아 · 박병용(1999). 웹기반 XML/EDI 시스템 설계. 한국정보과학회 가을 학술정보 발표논문집, 서울:한국정보시스템학회.
- 한상철(1999). 청소년지도 프로그램 평가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 연구, 제 6권 제1호, pp. 133-159.
- Coverse, N. & Lignugaris Kraft, B.(2009). Evaluation of a school-based mentoring program for at-risk middle school youth. *Remedial and Special Education*, Vol. 30 No. 1, pp. 33-46.
- LoSciuto, L., Rajara, A., Townsend, T,N., & Taylor, A,S.(1996). An outcome evaluation of across ages: An intergenerational mentoring approach to drug preven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 11 No. 1, pp. 116-129.
- Perters, Richard O.(1977). The community based school and community oriented

teachers : for student learning in the real world of the 1970's. unpublished.

Tierney, J. P., Grossman, J. B., & Resh, N. L.(1995). *Making a difference: An impact study of Big Brothers/Big Sisters*. Philadelphia: Public/Private Ventures.

건강보험공단 EDI포털(2011). <http://edi.nhic.or.kr>(검색일: 2011. 8. 10).

고용노동부 창조캠퍼스(2011). 청년, 멘토를 만나다. <http://www.creativecampus.kr> (검색일: 2011. 8. 10).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1년도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사업 공고. <http://www.mest.go.kr>(검색일: 2011. 6. 3).

보건복지부 휴먼네트워크(2011). <http://www.humannet.or.kr>(검색일: 2011. 7. 20).

여성가족부 위민넷(2011). <http://www.women.go.kr>(검색일: 2011. 8. 10).

세계시민단체연합(2011). <http://www.civicus.org>(검색일: 2011. 9. 10).

Cavell, T., DuBois, D., Karcher, M., Keller, T., & Rhodes, J.(2009). Policy brief: Strengthening mentoring opportunities for at-risk youth. http://www.nwrel.org/mentoring/pdf/mentoring_policy_brief.pdf(검색일: 2011. 11. 10).

KIS(2011). <http://www.ikis21.com/sub/edi.html>(검색일: 2011. 9. 6).

Korea Hands(2011). <http://www.koreahands.org>(검색일: 2011. 8. 16).

Performance Measures Grid(2011). <http://www.ojjdp-dctat.org/help/MentoringGrid.doc>(검색일: 2011. 10. 3).

연합뉴스 2009년 8월 13일자 기사: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강화한다.

연합뉴스 2011년 6월 1일자 기사: 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 1대1 멘토링

연합뉴스 2011년 6월 2일자 기사: '중단위기'교사-비행 청소년 멘토링 예산확보

Abstract

Mentoring Policy Alternatives for Youth Community Participation Paradigm Shif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ctual policy alternatives for activating youth mentoring and a 10-member youth mentoring specialist group composed of specialists from various fields was formed to proceed more effectively. The research team first shared the consciousness of the problem with youth mentoring and policy alternatives - which were based on the policy alternatives developed in 2010. Policy alternatives in 8 areas, were finally proposed and developed through exploring the concreting processes of new policy alternatives.

Although Korea has been pushing forward with various kinds of mentoring projects for multi-cultural youth, north-defecting youth, youth from low-income families, and delinquent youth - initiated by various government organizations including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the Ministry of Law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ose projects are sporadic and not systematic at this moment.

In the U.S.A., the mentoring support system is systematically established, and innovative programs regarding youth mentoring have been experimentally operated. Some of them includee-mentoring, peer mentoring, group mentoring, team mentoring, alternative delivery type and structure, tailored service for specific population and cultural group such as children of lawbreakers, etc.

The state government of Victoria, Australia supported US \$2.5mil. for the plan of establishing mentoring capabilities to support youth mentoring for 3 years from 2005 and for 4 years from 2008–2009 to 2011–2012, the state government plans to provide US \$3.9 mil. for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

For the activation of a Korean youth mentoring program, the following policy tasks must be performed:

-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integrated, cooperative youth mentoring support center,
- establishment of superior mentors and specialized manpower fostering,
- introduction of a creative youth mentoring incentive system,
- support in establishing the youth mentoring area and program system,
- execution of a youth mentoring participation registration system to enhance social credibility,
- the establishment of an e–monitoring system of youth mentoring,
- the development of an evaluation index,
- the establishment of a social support network in the areas of study, career path, leisure activities, emotions, psychology, administration, financial systems,
- the improvement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youth mentoring.

Key Words : Youth Mentoring, Peer Mentoring, Mentor, Policy Alternatives, Youth Mentoring Support Center.

201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1-R0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 II :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 김형주 · 임지연 · 한도희 · 김영애 · 김혁진 · 김인규
- 11-R0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 II : 청소년수련관 평가편람 / 김형주 · 임지연 · 한도희 · 김영애 · 김혁진 · 김인규
- 11-R0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 I / 이기봉 · 김현철 · 윤혜순 · 송민경
- 11-R03 청소년수련시설 인증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맹영임 · 조혜영 · 김민 · 김영호
- 11-R04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이유진 · 김영지 · 김진호 · 이용교 · 조아미
- 11-R04-1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청소년공부방 현황보고서/ 이유진 · 김영지
- 11-R05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 · 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 I / 성운숙 · 김영한
- 11-R05-1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 · 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 II : 한부모 · 조손가정을 중심으로 / 성운숙 · 김영한
- 11-R06 한국 아동 · 청소년 종합통계체계 구축 연구 / 김기현 · 김창환
- 11-R07 다문화가족 아동 · 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I / 양계민 · 김승경 · 박주희
- 11-R08 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 종단조사 II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이용 아동 · 청소년을 중심으로 / 황진구 · 이해연 · 유성렬 · 박은미
- 11-R09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 II / 김경준 · 오해섭
- 11-R09-1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 II : 청소년의 지역사회참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멘토링 활성화 정책 방안 / 김경준 · 오해섭
- 11-R09-2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 II :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운영 및 효과측정 / 김경준 · 오해섭 · 정익중
- 11-R09-3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 II : 청소년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 · 오해섭
- 11-R09-4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 II : 청소년멘토 훈련프로그램 개발 / 김경준 · 오해섭
- 11-R10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2010 II 사업보고서 / 이경상 · 백혜정 · 이종원 · 김지영
- 11-R10-1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2010 II 기초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활동참여 실태 / 이경상 · 백혜정 · 이종원 · 김지영 · 서우석
- 11-R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 / 임희진 · 김현신
- 11-R1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 : 2011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임희진 · 김현신 · 강현철
- 11-R12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윤철경 · 이민희 · 박선영 · 박숙경 · 신인순

- 11-R12-1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인식 연구 / 박숙경·김소희·오세정
- 11-R1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총괄보고서 / 최창욱·임영식·이인재·박균열·박병기
- 11-R13-1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감수성 / 박균열·홍성훈·서규선·한혜민
- 11-R13-2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판단력 / 이인재·김남준·김향인·류숙희·윤영돈
- 11-R13-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동기화 / 박병기·변순용·김국현·손경원
- 11-R13-4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품성화 / 이인재·김남준·김향인·류숙희·윤영돈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II : 총괄보고서 / 안선영·김희진·박현준 (자체번호 11-R2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2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II :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 / 장미혜·정해숙·마경희·김여진 (자체번호 11-R21-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3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II : 취약위계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 / 은기수·박건·권영인·정수남 (자체번호 11-R21-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최인재·모상현·강지현 (자체번호 11-R2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조사 결과 자료집 / 최인재·모상현·강지현 (자체번호 11-R22-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최은진·김미숙·김지은·박정연 (자체번호 11-R22-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4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이호근·김영문·정혜주 (자체번호 11-R22-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총괄보고서 / 장근영·박수익 (자체번호 11-R2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2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2011 민주시민 역량실태 조사 / 장근영·박수익 (자체번호 11-R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3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민주시민역량 교육환경 및 효과 / 김태준·이영민 (자체번호 11-R23-2)

수시과제

- 11-R14 창업,기업가정신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 한국-핀란드 비교연구 / 안선영·김희진
- 11-R15 한·중·일·미 고교생 진로 및 유학의식에 관한 국제 비교조사 / 이경상·임희진·김진숙
- 11-R16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 권일남·최창욱

- 11-R17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 / 황옥경 · 김영지
- 11-R18 소년원생의 출원 후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 이유진 · 조윤오
- 11-R19 저소득층 아동 ·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 이기봉 · 권순용 · 박일혁
- 11-R20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및 연계협력방안 연구 / 김기현 · 맹영임

수 탁 과 제

- 11-R25 청소년정책평가분석센터 / 김기현 · 최창욱 · 김형주
- 11-R26 중국인과 한국인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 청소년을 중심으로 / 윤철경 · 오해섭
- 11-R27 청소년 동아리활동 인증방안 연구 / 맹영임 · 조남익 · 손의숙
- 11-R28 2011 학교문화선도학교 운영 보고서 / 김영지 · 김경준 · 성윤숙 · 이창호
- 11-R29 2011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 · 김기현 · 모상현
- 11-R29-1 2011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시설별 개별 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 · 김기현 · 모상현
- 11-R30 20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김승경
- 11-R31 장애청소년 대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황진구 · 유명화
- 11-R32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조사 / 양계민 · 조혜영
- 11-R32-1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정책개발 연구 / 양계민 · 조혜영
- 11-R3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시범사업 운영매뉴얼 / 이기봉 · 김현철 · 안선영 · 최창욱 · 전명기 · 이진원 · 김주희
- 11-R33-1 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사례집 / 이기봉 · 김현철 · 안선영 · 최창욱 · 전명기 · 이진원 · 김주희
- 11-R34 학교부적응(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 / 윤철경 · 최인재 · 김윤나
- 11-R35 창의적체험활동 연계 지역 코디네이터 양성 연수교육과정 및 운영매뉴얼 개발 / 안선영 · 최창욱
- 11-R36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 개발 / 이유진 · 김영한 · 김형모
- 11-R37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 조혜영 · 양계민 · 김승경
- 11-R38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방향과 과제 / 이경상 · 김기현 · 김가람
- 11-R39 미래세대 가치관 분석 및 대응방안 / 임희진 · 백혜정
- 11-R40 '공정사회 실현' 교교생 논술대회 / 오해섭
- 11-R41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기현 · 임희진 · 장근영 · 김혜영 · 황옥경
- 11-R42 제7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 최창욱 · 김영지
- 11-R43 2011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 / 박수익 · 장근영 · 김형주
- 11-R44 수요자 중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방안 연구 / 김희진 · 이해연 · 황옥경 · 이용교
- 11-R45 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운영매뉴얼 및 교재개발 연구 / 오해섭 · 김경준 · 모상현
- 11-R45-1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 · 오해섭 · 모상현 · 천정웅 · 김지혜 · 김명화 · 오정아 · 박경현 · 방진희
- 11-R45-2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 오해섭 · 김경준 · 모상현 · 김세광 · 박선영 · 유가예
- 11-R45-3 멘토링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모상현 · 김경준 · 오해섭 · 박정배 · 진은설

- 11-R46 성인·청소년 세대 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 11-R46-1 청소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 11-R47 소년보호시설 인권상황 관련 의식조사 / 이유진
- 11-R48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장기종단 효과성연구 II / 장근영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1-S01 Becoming an Adult in South Korea(3/7)
- 11-S02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방안 워크숍(3/18)
- 11-S03 동기이론의 최근 경향(4/6)
- 11-S04 통계조사에서 무응답 문제와 가중치 작성(4/14)
- 11-S05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4/22)
- 11-S06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도입의 의의와 방안 탐색(4/25)
- 11-S07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4/28)
- 11-S08 2010 고유과제 연구 성과 발표 자료집(5/13)
- 11-S09 Youth's Perception on Entrepreneurship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5/12)
- 11-S10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관련 논의의 초점들(5/19)
- 11-S11 아동·청소년 패널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교육종단연구 2010(5/25)
- 11-S12 아동·청소년 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시 복지패널조사(6/2)
- 11-S1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개념 및 지표체계 정립(5/25)
- 11-S14 사회복지시설인증제 도입방향 및 경과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방안을 위한 시사점 모색(5/27)
- 11-S15 방과후 서비스 현황과 종단조사(5/25)
- 11-S16 다문화 종단 연구 패널 연구 방법론 I (6/15)
- 11-S17 해외 평가 동향(6/20)
- 11-S18 청소년공부방 현장실사위원 워크숍(6/20)
- 11-S19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워크숍 II (6/24)
- 11-S20 학교문화선도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6/24)
- 11-S21 다문화 종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II (6/29)
- 11-S22 다문화 종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III (7/11)
- 11-S2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콜로키움 자료집II :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방안(7/28)
- 11-S24 보육시설 평가인증 전과정과 현황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사점 모색(8/9)
- 11-S25 2011년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2010 데이터분석 방법론 세미나 자료집(8/30)
- 11-S26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워크숍 자료집 : 시범사업 중간발표 및 워크숍(8/18, 19)

- 11-S27 청소년수련관 인증제 도입 방안(9/1)
- 11-S28 청소년문화의 집 인증제 도입 방안(9/2)
- 11-S29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정책 대안 관련 워크숍(9/19,20)
- 11-S30 국내외 청소년 도덕성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현황과 사례(9/9)
- 11-S31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과제 발굴(9/28,29)
- 11-S32 한중 관계의 미래: 한국과 중국 청년의 한중 관계에 대한 인식과 역할 강화방안 한·중 국제 세미나(9/22)
- 11-S33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개발을 위한 워크숍(9/30)
- 11-S34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10/12)
- 11-S35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10/17)
- 11-S36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11/1,2)
- 11-S37 청소년 활동개념 재정립에 관한 정책 세미나(10/26)
- 11-S38 2011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북발전연구원 공동세미나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정책방향(10/27)
- 11-S39 제1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11/4)
- 11-S40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11/4)
- 11-S4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콜로키움 자료집(11/2)
- 11-S42 미래세대 가치관 대응 방안(12/1)
- 11-S43 2011 한·중 청소년 정책 세미나
청소년 우대제도의 현황과 과제 : 청소년 우선개발의 이념과 행동 (12/6)
- 11-S44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개발 성과보고회 및 '12년 시범사업 설명회(12/9)
- 11-S45 멘토링 운영 매뉴얼 및 교재 개발 연구 세미나(12/9)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1호(통권 제6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2호(통권 제6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3호(통권 제6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4호(통권 제63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 :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 : 1부 일본의 「종합적학습」 가이드 “요코하마의 시간”
2부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 보고서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I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V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교육 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용 / 한상철 · 길은배 · 김 민 · 김진호 · 김혜원 · 문성호 · 박선영 · 설인자 · 오승근 · 윤은중 · 이명옥 · 이은경 · 최순중 · 김영지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 : 청소년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중 · 고등학생용)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창의적체험활동 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I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사고력 / 김기현 · 장근영 · 임영식 · 정경은 · 조아미 · 정재천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사회성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율 · 김지수 · 김영희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I : 핵심역량-자율적행동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율 · 김지수 · 김영희

기타 발간물

- NYPI YOUTH REPORT 12호 : 창의적 체험 활동(2010년12월)
- NYPI YOUTH REPORT 13호 : 소년원 교육 효과성 개선 방안(8월)
- NYPI YOUTH REPORT 14호 : 청소년 활동 지역네트워크 구축(8월)
- NYPI YOUTH REPORT 15호 :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9월)
- NYPI YOUTH REPORT 16호 :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 개선방안 (9월)
- NYPI YOUTH REPORT 17호 :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실태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18호 : 방화후돌봄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10월)
- NYPI YOUTH REPORT 19호 :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진단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20호 : 한국 청소년 건강실태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21호 : 한국 청소년 안전(보호)실태 조사(11월)
- NYPI YOUTH REPORT 22호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발전방안(11월)
- NYPI YOUTH REPORT 23호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발달권, 참여권(11월)
- NYPI YOUTH REPORT 24호 : 청소년의 가족의식·가정생활 실태조사(11월)

집 필 진

고형복 (서초구립방배유스센터 · 관장)
남부현 (경기대학교다문화센터 · 연구원)
박옥식 (청소년미디어센터스스로넷 · 관장)
오정아 (한남대학교 · 외래교수)
이교봉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부장)
천정웅 (대구가톨릭대학교 · 교수)

연구보고 11-R09-1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 II: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멘토링 활성화 정책 방안

인 쇄 2011년 12월 21일
발 행 2011년 12월 26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계문사 전화 02)725-5216 대표 류윤현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대외협력·학술정보팀)

ISBN 978-89-7816-960-8(93330)

978-89-7816-958-5(세트)